

제82회 전북사학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지하 1층 꽃심관

2021. 06. 05.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제81회 전북사학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 발표순서

사회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1. 고려 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와 정치·사상적 의의 1쪽
 - 발표 : 박현진, 전북대학교
 - 토론 : 심경순, 전북연구원

- 주제 2.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21쪽
 - 발표 : 이가희, 전주대학교
 - 토론 : 이선아, 전북대학교

- 주제 3. 동학 접주 허선의 활동과 가계 검토43쪽
 - 발표 : 나하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토론 : 송만오, 전북대학교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공지사항

회원분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가 변경되신 분은 전북사학회 메일 (jha-mail@naver.com)로 연락해 주셔야 학회의 다양한 소식과 학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와 정치·사상적 의의

박현진 /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고려 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와 정치·사상적 의의*

박현진**

〈목 차〉

- I. 머리말
- II.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 결정과 배경
 - 1) 출가 결정 주체
 - 2) 출가 배경
- III. 의천의 출가의 정치·사상적 의의
 - 1) 정치적 의의
 - 2) 사상적 의의
- V. 맺음말

1. 머리말

大覺國師 義天은 高麗 제11대 文宗(재위 1046.5.~1083.7.)과 문종의 2妃 仁睿太后的 10男 4女 중 4子로 태어난 왕자였다. 그러나 의천은 1065년(문종 19) 11살의 나이에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華嚴宗 승려 景德國師 爛圓(999~1066)을 스승으로 삼아 出家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의천은 1101년(숙종 6) 9월 46세의 나이로 入寂하는데, 출가하고 입적할 때까지 ‘入宋求法’과 教藏의 간행 및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 이른바 ‘천태종 개창’이라고 하는 教禪融合의 입장에서 고려 불교계의 재편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求法활동과 佛事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와 활동은 고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의천은 ‘왕자 출신 승려’라는 점에서 고려 정치·불교사에서 지니는 의의 때문에, 고려시대 수많은 승려들 중에서도 그는 학계에서 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의천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축적되었는데,¹⁾ 의천의 출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

* 본래 제목은 ‘고려중기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과 정치적 연관성’이었으나 발표문 작성 과정에서 의천의 활동 중에서도 ‘출가’를 중심으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본고는 필자가 현재 박사학위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박사수료)

1) 의천에 대한 연구 성과는 크게 ① 入宋求法 및 동아시아 불교 교류와 관련된 연구, ②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의의에 대한 연구, ③ ‘天台宗’ 개창으로 귀결되는 고려 불교계 재편 및 사상 관련 연구, ④ 저술 및 편찬 활동 관련 연구, ⑤ 기타 분야의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 성과의 양은 수백 편에 달한다.

만 단독 연구보다는 출가 이후 의천의 활동과 생애, 그리고 그 정치·사상사적 의의를 밝히고 강조하는 연구에서 간단하게 다루어지거나,²⁾ 고려시대 왕실의 출가자 배출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사례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³⁾ 이는 의천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왕자로서 출가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출가 이후 의천의 다양한 활동에서 그의 정치·사상사적 의미를 더 찾고자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의천의 출가의 동기나 목적, 출가 배경을 두고, 佛法을 향한 求法 의지나 개인적 求道の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의천이 문종 대 왕권 강화를 위해 왕실을 대표하여 화엄종으로 출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견해를 더 보면, 의천이 다른 종파가 아닌 화엄종으로 출가한 것은 당시 仁州李氏 이자연의 아들 ‘韶顯’이 法相宗으로 출가하는 등 문벌 귀족과 敎宗의 하나인 法相宗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왕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왕실 대표자로서 의천을 敎宗 중 또 다른 종파인 화엄종으로 출가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곧 ‘문벌 귀족—법상종—소현’ 對 ‘왕실—화엄종—의천’이라는 구도 속에서 고려 전기 불교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도 이런 입장에 공감하지만, ‘문벌 귀족—법상종—소현’ 對 ‘왕실—화엄종—의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자칫 의천의 출가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 정치·사회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쉽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만약 의천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출가한 것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의천의 출가 이전까지의 고려 전기 왕실의 상황이나 불교계 각각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왕실 및 귀족가문과 불교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또 의천이 출가할 당시의 문종 대 왕실 내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피고 난 후에야 정말로 의천의 출가가 정치적 차원에서 더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상적인 차원에서 더 이루어진 것인지 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미진하게 규명되거나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직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하는 의미로, 의천의 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의천의 출가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고려 전기 정치·불교사의 역학적인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의천의 출가의 실재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의천의 전기 자료에 나타나는 그의 출가 기록을 비교 검토하여 의천의 출가 결정 주체에 대해 검토해보고, 1065년 의천이 출가할 당시 의천 외 문종의 다른 왕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종의 여러

본고에서는 지면 사정 상 모든 연구 성과를 나열할 수 없어 연구 경향만 제시하는 그치며, 의천의 연구 성과 및 경향에 대한 연구성과로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김상현, 「大覺國師 義天 關係 參考文獻」, 『천태학연구』 4,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2.6; 박용진, 「義天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학논총』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2) 대체로 주 1)에서 언급한 연구경향의 선행연구들이 그러하다.

3) 김용선, 「고려 승려의 일대기」, 『인문학연구』 7,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2000; 『고려금석문연구』, 일조각, 2004;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高麗時代 승려의 血族間 師承과 그 意味」, 『한국사연구』 142, 2008;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2;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왕실 출신 화엄종 5 국사(國師)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2011.3.

왕자들 중에서 의천이 출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이러한 의천의 출가가 지니는 의의를 정치적, 사상적 측면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 전기 정치·사상적 연계성과 의천의 출가가 지니는 의미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

의천은 본래 문종과 인예태후의 넷째 아들로 즉, ‘왕자’였다. 여기서 우리는 왕자인 ‘왕후’⁴⁾가 출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왜 어떠한 연유에서 출가하였으며, 그렇다면 그의 스승은 누가 되었고, 왕자의 출가 절차는 어떠한이었는지 많은 문제의식을 떠올릴 수 있다.

사실 출가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깎는 행위[剃髮, 祝髮, 落髮]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⁵⁾ 고려시대에는 ‘僧政’을 통해 출가를 비롯하여 승려들과 관련된 일들을 통제하였는데, 출가 또한 나라에서 정해놓은 戒壇에서 受戒 의식을 행해야 공식적으로 출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僧科’를 통해서 敎宗選과 禪宗選 별로 통과를 해야, 그 종파 소속의 승려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⁶⁾

그렇다면 의천의 출가는 어떠한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의 傳記 자료인 『高麗史』 列傳 기록과 「興王寺大覺國師墓誌銘」(1101, 이후 「홍왕사묘지명」), 「영통사대각국사비」(1125, 이후 「영통사비」), 「선봉사대각국사비」(1132, 이후 「선봉사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1-고 문종이 하루는 모든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僧이 되어 福田을 지어 이롭게 하겠는가” 하니, 煦가 일어나 말하기를, “臣이 出世의 뜻이 있으니, 다만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스승을 따라 나가 靈通寺에서 지냈다. 후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처음에는 華嚴을 배우고 五敎에 통달하게 되었으며, 儒術도 두루 섭렵하여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號는 祐世僧統이다. … 7)

1-흥 11세 때 文考께서 그 穎悟함을 다르게 여겨 靈通寺 景德國師를 불러 親敎師로 삼아 출가하게 하고, 佛日寺 戒壇에 나아가 수계를 한 즉, 夙世에 학습한 것이 놀랄 정도니, 부처님의 一代宗乘을 스스로 解得하지 않음이 없었다. 경덕국사가 歸寂함에 이르러 국사께서 그 法門을 계승하였으므로 當世에 뛰어난

4) 이 장에서는 출가하기 이전의 의천과 그러한 의천의 왕자 신분을 더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이름인 ‘왕후’를 사용하여, ‘왕후’와 ‘의천’을 병용하고자 한다.

5) 출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이정훈, 앞의 논문, 2009.2, 98쪽 주 22 재인용.

6) 허홍식,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7) 『고려사』 권90, 열전 3, 宗室 1, 「大覺國師煦」, “文宗一日謂諸子曰, 孰能爲僧作福田利益耶 °煦起曰, 臣有出世志惟上所命 °王曰, 善 °遂隨師出居靈通寺 °煦性聰慧嗜學, 始業華嚴, 便通五敎, 旁涉儒術, 莫不精識 °號祐世僧統 °”

學佛者로 알려졌다. 당시 戒律宗, 法相宗, 涅槃宗, 法性宗, 圓融宗, 禪寂宗이 있었는데, 국사는 이 六宗에 있어서 아울러 그 연구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外典인 六經七略 등의 서적에도 각각 그 醇趣, 즉 심오한 趣旨를 발명하였으므로 文考께서 포상하여 ‘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이 되었다. 말형인 順宗과 둘째 형인 宣宗도 은종의 예를 심히 두텁게 하여 누차에 걸쳐 法號를 가호하였다. 遼나라 天佑皇帝도 再次 경책과 茶香, 金帛 등을 보내 옴으로써 국사와 師資의 인연을 맺었다. … 8)

1-영 어느 날 문종 임금께서 모든 왕자를 불러 놓고, “누가 능히 스님이 되어 福田으로 國祚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국사께서 일어나 여쭙기를, “신이 출가 수도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오직 원하옵건대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되, “좋다” 고 윤허하였다. 어머니인 인예태후가 이 말을 듣고 태몽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학업을 마친 다음 부왕의 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을사년 5월 14일 景德國師를 내전으로 초청하여 은사가 되어 삭발 受戒토록 하였다. 이 때 문종이 재배하고 경덕국사를 따라 궁중에서 영통사에 있게 하였다. 그 해 10월 佛日寺 戒壇에 가서 구족(具足)을 받았으니 당시 나이 11살이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학문을 쉬지 아니하였다. 이미 成人이 된 후 어느 날 꿈에, 어떤 사람이 燈觀法師의 책을 전해주는 것을 받았다. 이 때부터 국사는 慧解가 날마다 증진하였다 … 賢首教觀으로부터 頓漸과 大小乘의 經律論에 따른 章疏에 이르기까지 탐색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餘力으로 外學에 대해서도 仲尼와 老聃의 서적과 제자백가의 集錄, 모든 史記까지 견문이 淵橫하였다 … 정미년 7월 을유에 문종이 교서를 내려 포창하고 祐世僧統이라 하였다 … 9)

1-선 11세 때 文宗의 宿志로 景德國師 爛圓에게 의탁하여 剃度하였다. 그로부터 賢首教觀인 『화엄경』을 受學하다가 경덕국사가 入寂한 후에도 그 徒弟와 더불어 講學을 中止하지 않았다. 또 널리 모든 종파를 會通하니 학자들이 함께 모여 講論함에 있어 무릇 얻은 바가 초월하고 비범하여 마치 老師 또는 久叅과 같이 여러 종파와 다방면에 걸쳐 精通하지 않음이 없었다. 文祖 23년에 祐世라는 호를 하사하고 僧統職을 내렸다. 이로부터 사방에서 찾아오는 學人의 근기를 헤아려 隨機說法을 하되, 성스러운 道場에서 師子吼를 발하여 百千法門을 연설하여 人天의 한량없는 대중을 제도코자 하여 장차 자신이 얻은 바의 견해로써 이를 사람들에게 질문하여 믿음을 당시인들에게 취하려 했다. 그러므로 일찍이 入宋求法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였다. … 10)

인용문을 통해 의천의 출가 장면을 종합해보면, 의천은 문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 대표로 출가를 하였으며, 경덕국사를 스승으로 하여 출가 한 후 영통사에서 지내다가 불일사 계단에서 수계를 받았고, 화엄뿐만 아니라 外學에까지도 정통하는 등 학문이 매우 뛰어났으며, 그리하여 문종 대에 ‘우세’라는 호와 ‘승통’의 지위에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8) 「홍왕사대각국사묘지명」, “年跨十一文考異其穎悟, 召靈通寺故景德國師爲親教而出家, 就佛日寺戒壇受具, 則夙習警矣 一代宗乘無不自解 °泊景德歸寂, 師繼法門而當世之學佛者, 有戒律宗, 法相宗, 涅槃宗, 法性宗, 圓融宗, 禪寂宗, 師於六宗並究, 至極外及六經七略之書, 各發醇趣, 故文考褒爲廣智開宗眞祐世僧統, 順宗宣宗恩禮甚厚累加法号 °大遼天佑皇帝再寓經籍茶香金帛以結信緣忽”

9) 「영통사대각국사비명」, “上一日謂諸子, 曰, 孰能爲僧作福田爲利益乎 °師起, 曰, 臣有出世志, 惟上所使 °上曰, 善 °母后以前夢貴徵竊惜之 而業已受君命, 叵如之何 °乙巳五月十四日, 徵景德國師, 於內殿剃, 上再拜之許, 隨師出居靈通寺 °冬十月, 就佛日寺戒壇受, 時春秋十一歲 °而學問不息己能成人 °嘗夢人傳燈觀法師書, 自是慧解日進 … 自賢首教觀及頓漸大小乘經律論章疏, 無不探索 °又餘力外學見聞淵橫, 自仲尼老聃之書, 子史集錄百家之說 … 丁未七月乙酉, 教書褒爲祐世僧統 … ”

10) 「선봉사대각국사비명」, “年十一承 文祖宿志, 投景德國師剃度, 受賢首教觀 °景德卒與其徒講學不止又廣會諸宗學者相與講論凡有所得卓爾非凡老師宿德之跂及 文祖二十三年賜號祐世授職爲僧統 於是擬於方來欲聖道場發師子吼演說百千法門度人天無量之衆則將以已之所得者質之於人以取信於時故嘗請入宋求法”

의천의 출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있으나, 자료별로 의천의 출가 배경이나 절차 등의 서술에서 상이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를 비교하여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천의 출가 관련 기록 비교

구분		고려사 열전	홍왕사묘지명	영통사비	선봉사비
출가 결정	문중 問	一日謂諸子曰, “孰能爲僧 作福田利益耶”	-	一日謂諸子曰, “孰能爲僧 作福田爲利益乎”	-
	왕후 答	“有出世志 惟上所命”	-	“有出世志 惟上所使”	-
	결정	王曰, “善”	穎悟함 다르게 여겨 출가시킴	上曰, “善”	文祖宿志
출가 절차	隨師出 居靈通寺	靈通寺 故景德國師 부름 → 親教師 삼음 → 의천 출가 → 佛日寺 戒壇 구족계 받음	景德國師 불리 內殿에서 剃髮 (乙巳(1065) 5.14.) → 上再拜之許 → 隨師出 居靈通寺 → 佛日寺 戒壇 수계 받음(10월)	投景德國師剃度	
수학 내용	• 華嚴 • 五教 • 儒術	• 경덕국사 입적 후 法門 계승 • 六宗並究 • 六經七略	• 화엄(燈觀法師書, 賢首教觀) • 頓漸, 大小乘의 經律論과 章疏 • 外學(仲尼老聃之書, 子史集錄, 百家之說)	• 賢首教觀	
號	祐世僧統	廣智開宗弘眞 祐世僧統	祐世僧統 (丁未(1067) 7월 을유)	賜號祐世 授職爲僧統 (문종 23년(1069))	

인용문과 <표 1>에 정리된 내용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의천의 출가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① 당시 의천의 출가 결정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하는 ‘출가 결정 주체’와 ② 문종의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의천이 발탁되어 출가하게 되었는가 하는 ‘출가 배경’문제이다. 각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가 결정 주체

먼저 ① ‘출가 결정 주체’를 보면, 고려사 열전과 영통사비에는 문종이 자신의 여러 아들들을 모아놓고 “누가 능히 승이 되어 복전을 지어 이롭게 하겠는가” 물으니, 여러 왕자들 중에서

의천이 ‘출가할 뜻[出世志]’이 있으니 문종이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여, 문종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의천이 출가하였다는 것으로 나온다. 즉 문종도 자신의 아들들 중 누군가를 출가시키려는 뜻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의천 또한 본인이 직접 출가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홍왕사묘지명 및 선봉사비에는 문종과 의천의 문답 장면 없이 문종이 이미 의천을 출가시킬 왕자로 정하고, 이러한 문종의 결정에 의해 의천의 출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사 열전 및 영통사비에서는 명확히 드러나는 의천 개인 스스로의 출가 의지가不在하는 것이 특징이다.¹¹⁾ 이에 기존 연구에서도 의천의 출가가 문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과¹²⁾ 의천의 개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의천의 출가 결정은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사료를 종합해보면, 의천의 출가 결정은 왕자를 출가시키고자 했던 문종의 뜻과 의천 개인의 출가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천의 출가는 ‘왕후’한 개인만의 출가가 아니라 고려라는 한 나라의 왕자의 출가라는 점을 상기하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왕실의 입장이 의천의 출가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어느 시대이든 高位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 그 신분을 뒤로 하고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승이 된다고 할 때, 출가하려고 하는 당사자 개인의 출가 의지가 그 사람의 출가 동기나 배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 맞다. 그러나 오히려 고위의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 출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위 신분자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의 출가 의지대로 출가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출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위 신분자일수록 출가 의지가 있어도 개인의 의지와 주변 상황·조건이 서로 부합할 때 출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¹³⁾ 주변 상황·조건에 의해 출가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¹⁴⁾

그렇기 때문에 의천의 출가 결정도 온전히 그의 개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의천의 출가 의지와 함께 문종의 의지나 왕실의 입장, 당시의 정치·사회적 입장이 보다 더 작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1) 「홍왕사묘지명」과 「선봉사비」에서는 의천 개인의 출가 의지는 부재한다. 그러나 홍왕사묘지명에서 문종이 의천의 영오함을 달리 여겨 그를 출가시켰다는 것이나 선봉사비에서 문종의 宿志에 의해 의천이 출가하였다는 등의 서술은 결국 『고려사』 열전과 「영통사비」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 여러 왕자들 중에서 출가할 만한, 혹은 출가시킬 만큼 남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 의천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는 변함없다.

12) 이정훈, 앞의 논문, 2009.2, 97-98쪽.

13) 박용진도 이런 점에서, 당시 문종은 1067년(문종 21) 홍왕사의 낙성 및 준공 즈음하여 국왕권의 우위를 접하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불교계 영도자로서 의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 하며, 의천 또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 이러한 문종의 뜻과 의천의 소망이 부합하여 의천의 출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1, 53-54쪽).

14) 이에 이정훈은 고려 전기 왕실에서 왕자와 종실, 소군들의 출가는 국왕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앞의 논문, 2009.2, 99쪽), 남동신도 그 동기가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왕실 자체의 출가가 타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 왕자의 경우 한결같이 왕명에 의한 타율적 출가라고 보았다(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43쪽).

2) 출가 배경

의천의 출가가 ‘왕후’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문종과 왕실의 입장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② 문종의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의천이 발탁되어 출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⁵⁾ 이 부분도 ①과 마찬가지로 의천 출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¹⁶⁾ 『고려사』 열전과 「영통사비」에서 보이는 ‘諸子’ 즉, 의천이 출가한 1065년 당시의 문종의 아들들로는 실제로 누가 있었고, 당시 왕실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살펴봄으로써 의천의 출가 당시의 장면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의천의 출가 당시 문종이 불러 모았다고 하는 ‘諸子’는 글자 그대로 ‘문종의 여러 아들들’ 또는 ‘문종의 모든 아들들’로 해석되지만, 이 ‘諸子’ 두 글자에는 1065년 당시의 문종의 왕자들과 그들의 관계가 매우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일단 문종과 인예태후 소생 왕자 10명 중에서 출생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훗날의 順宗(1047~1083), 宣宗(1049~1094), 肅宗(1054~1105)과 의천(1055~1101) 4명으로, 1065년에 이들은 각각 19살, 17살, 12살, 11살이었다. 의천 아래로는 상안공 왕수(?~1094),¹⁷⁾ 도생승통 탕[보응승통 규](?~1112),¹⁸⁾ 금관후 왕비(?~1092),¹⁹⁾ 변한후 왕음(?~1086),²⁰⁾ 낙랑후 왕침(?~1083),²¹⁾ 충혜

15) 이 문제는 문종 대 의천의 출가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과 고려 전기 전반의 왕실 및 귀족 가문의 출가 문제 속에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본 장에서는 전자에 더 초점을 맞춰 논지를 전개하고, 후자는 고려 정치와 불교의 연관성을 더 초점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6) 문종의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의천이 발탁되어 출가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료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도 의천 개인이 남다른 성품과 출가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천이 출가할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종의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의천이 출가하게 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의천 출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17)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常安公王琇」, “常安公琇, 文宗二十五年, 授開府儀同三司·檢校尚書令·守司空·上柱國·平壤侯, 食邑一千戶. 二十七年, 王遣中書侍郎金行瓊·衛尉卿李靖恭于尚書省, 行冊禮, 并賜印綬·衣帶·鞍馬·匹段·銀器·布貨等物, 冊曰, “周開五等之封, 增恢茂業, 漢置七王之輔, 永耀丕圖. 伊制理之惟艱, 必宗蕃而是賴. 宜遵綱矩, 益闡芬猷. 咨! 爾王子琇, 天縱藝能, 生知仁孝. 劉睦之謙, 恭育性, 孚体至和, 始興之清, 素飭躬, 雅符僉囑, 克膺德懋, 高映威流. 乃推敦睦之懷, 俾示旌庸之眷, 授之大邑, 進以崇資. 今遣使某官某等, 持節備禮, 冊爲開府儀同三司·檢校尚書令·守司空·上柱國·平壤侯, 食邑一千戶. 於戲! 朕則舉不由私, 致加於公望, 爾則動無違禮, 勉奉於官, 常保以恩榮, 慎厥終始.” 宣宗三年, 加守司徒, 食邑二千戶, 進封常安公. 獻宗即位, 加守太保. 元年卒, 諡英良.” 의천의 바로 아래 동생이므로 그가 적어도 1056년에 출생하였다고 한다면, 왕수는 16살에 식읍 전 호를 받고, 18살에 책봉을 받았으며, 31살에 수사도 식읍 2천호와 상안공 진봉을 하고, 39살의 나이로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18)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道生僧統窺」, “道生僧統窺, 文宗二十四年, 命祝髮, 後住俗離寺. 睿宗七年, 或告窺與尚書右丞金仁碩·全州牧使李汝霖, 交通圖不軌. 王流窺于巨濟縣, 及其黨汝霖·仁碩·殿中少監河彥碩·刑部尚書任申幸·大卿李仲平·刑部員外郎李日肅, 將軍金澤臣·宋英漢, 別將金有成, 知南原府使李綏, 寧朔鎮使李日衍, 崇教寺僧資尙, 并仁碩·汝霖·申幸·彥碩等子, 流遠地. 誅資尙于中路, 窺尋卒. 窺財累鉅萬, 厚施於人, 故貪利者, 多附之, 終以此敗.” 그런데 도생승통 탕은 고려사 열전 인예태후전에는 ‘普應僧統規’로 나온다(『고려사』 권88, 열전 1, 후비 1, 「仁睿順德太后李氏」, “后生順宗, 宣宗, 肅宗, 大覺國師煦, 常安公琇, 普應僧統規, 金官侯杰, 卞韓侯愔, 樂浪侯忱, 聰慧首座璵, 積慶, 保寧 二宮主”).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문종의 6자의 속명을 두고 ‘窺’라고 지칭하는 입장이 많고(허홍식, 「유가종의 계승과 소속사원」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217쪽; 토니노 푸지오니, 「高麗時代 法相宗教團의 推移」,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87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6』 2013, 54쪽), ‘窺’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남동신,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佛敎研究』 30, 한국불교연구원, 2009, 30-31쪽). 이는 결국 도생승통이 1112년(예종 7)에 반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후대의 부정적인 인식이 그의 속명에 반영되어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박현진,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치」,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18쪽, 각주 54).

19)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金官侯」, “文宗三十一年, 授特進·檢校司空·上柱國·金官侯, 食邑一千戶. 신출

수좌 경(?~?)²²⁾ 6명이 있다. 이들의 출생 연도는 기록이 없어 의천이 출가할 당시 이 6명의 왕자가 다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안공 왕수나 도생승통 탕까지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천 출가 당시의 인예태후 소생 왕자는 최소 5~6명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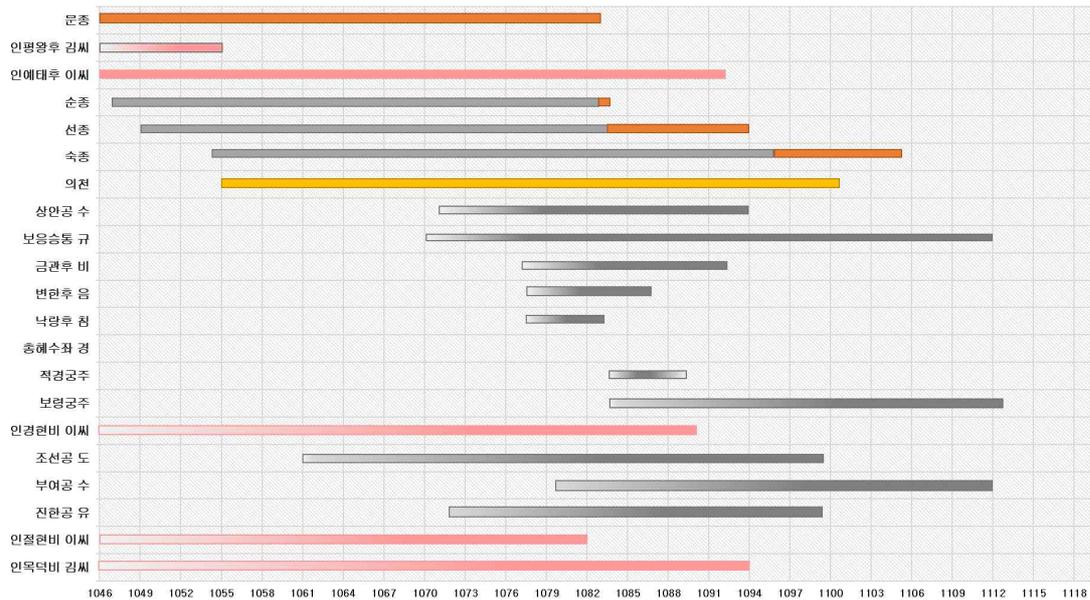


그림 1. 문종대 왕실의 상황 (『고려사』 열전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문종의 아들로는 인예태후 소생 왕자뿐만 아니라 문종과 인경현비 소생의 3명의 아들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조선공 왕도(?~1099), 부여후 왕수(?~1112), 진한후 왕유(?~1099)이다.²³⁾ 이들 모두도 출생연도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이 세 명 중에서 조선공 왕도는 이미 1061년(문종 15)에 ‘崇仁廣義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尚書令 守司徒 上柱國 朝鮮侯’로 책봉되어 食邑 2,000戶를 받고 있어, 1065년에 ‘諸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천의 고려사 열전과 묘지명, 비명 등에서 의천이 ‘문종과 인예태후의 4子’라는 점이 부각되어, 기존 연구에서도 ‘문종의 諸子’를 문종과 인예태후 소생의 왕자들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의천의 열전과 묘지명, 비명에서도 ‘문종의 諸子’가 정

자가學術. 扶餘公燾, 嘗娶積慶宮主, 新출자與楡·愉等, 諫以爲不可娶同姓, 王不從. 宣宗三年, 進檢校尚書令·守司徒, 食邑二千戶. 九年卒, 贈守太尉兼中書令, 食邑三千戶, 食實封五百戶. 王曰, “曩者, 章順侯無後而卒, 依浮屠法散骨. 今金官侯無嗣, 宜準章順例. 然此法出於釋氏, 不足依據. 宜卜地厚葬, 以永春秋之饗.” 有司竟奏不行. 諡莊憲.”

20)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卞韓侯愷」, “文宗三十一年, 授特進·檢校司空·上柱國·卞韓侯, 食邑八百戶. 宣宗三年, 進檢校尚書令·守司徒, 食邑二千戶. 九月卒, 諡章順.”

21)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樂浪侯忱」, “文宗三十七年卒, 追封樂浪侯.”

22)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 「聰惠首座璟」, “聰惠首座璟.”

23) 『고려사』 권90, 열전 3, 宗室 1, “文宗十三子 °仁睿太后李氏生順宗, 宣宗, 肅宗, 大覺國師煦, 常安公琇, 道生僧統鏡, 金官侯燾, 卞韓侯愷, 樂浪侯忱, 聰惠首座璟 °仁敬賢妃李氏生朝鮮公燾, 扶餘侯燾, 辰韓侯愉”; 『고려사』 권90, 열전 3, 종실 1에 인경현비「朝鮮公燾」, 「扶餘侯燾」, 「辰韓侯愉」

확히 누구누구인지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 다만 1065년 당시 실제로 ‘문종의 諸子’ 들로 최소 누가 있었을지 살펴 본 결과, 인예태후 소생의 왕자들로는 의천을 포함하여 최소 5~6명 이상과 인경현비 소생 왕자로 조선공 왕도 1명 총 6~7명 이상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②번 문제로 돌아가, 1065년 당시 문종의 이러한 여러 왕자 중에서도 의천이 발탁되어 출가하게 된 배경, 원인은 무엇일까.

당시 문종이나 왕실 입장에서 고려 왕실을 대표하여 왕자들 중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출가시켜야 했다면 출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상의 왕자들 즉, 인예태후 소생 왕자들뿐만 아니라 인경현비 소생의 왕자까지 모두 불러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왕실 대표로 왕자 한 명을 출가시킨다고 했을 때 왕위를 계승할, 왕위 계승 순위가 우선인 왕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왕자들 중에서 출가시켜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순종은 1054년(문종 8) 2월에 이미 왕태자 책봉을 받은 상태였고, 선종은 1056년(문종 10) 3월에 국원후에 책봉되었으며, 숙종은 의천이 출가한 시기인 1065년 5월보다 세 달 앞서서 1065년 2월에 계림후에 책봉되었다. 인경현비 소생 조선공 왕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1061년에 조선후로 책봉되고 있었다.

이러했던 상황에서 문종이 여러 아들들을 모아놓고 “누가 능히 승이 되어 복전을 지어 이롭게 하겠는가” 하고 물어보았을 때, 순수하게 불법에 뜻이 있어 출가를 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또는 정말 출가를 할 수 있는 왕자로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레 출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왕후’ 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고려사』 열전과 「영통사비」에서 보이는 문종의 질문 장면은 이미 어느 정도 출가할 왕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한다.

여기에 또 다른 현실적인 요인으로 정종 대와 문종 대에 만들어진 출가 규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036년(정종 2)에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을 경우 한 명의 아들을 출가할 수 있게 하되 계단이 설치된 특정 사원에서 經과 律을 시험 보게 하였다.²⁴⁾ 1059년(문종 13)에는 兩京 및 東南의 州, 府, 郡, 縣에서 一家에 세 명의 아들을 두었을 경우 한 명의 아들을 剃髮할 수 있게 하되 그 연령을 15세로 제한하였다.²⁵⁾ 당시 고려 사회에는 적어도 세 아들을 두어야 한 명의 아들이 출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⁶⁾ 문종은 정종대의 출가 규정에 이어서 재위 기간 초반에 이를 더 구체화시켰는데, 이는 자신의 아들들을 출가시키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

24) 『高麗史』 권 6, 세가 6, 정종 병자 2년 5월, “辛卯 制 凡有四子者 許一子出家 於靈通 嵩法 普願 桐華等寺戒壇 試所業經律.”

25) 『고려사』 권 8, 세가 8, 문종 기해 13년 8월, “丁亥 制 兩京及東南 州府郡縣 一家有三子者 許一子年十五 剃髮 爲僧.”

26) 이러한 고려의 출가 규제 분위기를 국역의 확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허홍식,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 制度」 『高麗佛敎史研究』, 1986, 319쪽;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 2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2, 120쪽; 한기문, 「고려시대 僧侶 出家 양상과 사상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2010, 55쪽). 한 집의 아들이 세 명 또는 네 명 이상일 때 한 명의 아들을 출가 시킨 경우는 의천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 승려들의 출가 사례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인주이씨 이자연의 다섯째 아들로 범상종으로 출가한 慧德王師 韶顯(1038 ~ 1096)이 있다(박현진,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치」,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이 외에도 해린의 문도이자 1095년(현종 1) 이자의의 난에 가담하여 유배당했던 世良은 이정의 다섯째 아들이었으며, 더 훗날의 일이지만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에 가담하였던 義莊은 이후의 孫이자 이자겸의 다섯째 아들이었다(박현진,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치」,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8-9쪽, 각주 3).

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문종의 왕자들 6~7명 중에서도 인예태후 소생 4子인 의천이 왕실을 대표하여 출가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종 대에는 의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천의 同腹 형제인 도생승통 탕과 총혜수좌 경 2명이 더 출가하고 있다.²⁷⁾ 도생승통과 총혜수좌의 출가도 왕자의 출가라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인데, 어찌됐든 공교롭게도 문종의 왕자 총 13명 중에서 출가를 한 아들들은 모두 인예태후 소생의 왕자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인경현비 소생의 왕자는 3명인 반면, 인예태후 소생의 왕자는 10명이었다는 점에서 문종대 왕자의 출가는 인예태후 소생 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7) 문종의 6子인 도생승통 탕은 1070년(문종 24) 5월에 범상종 승려 소현의 문하로 출가하였고, 문종의 10子인 총혜수좌 경은 종파를 알 수 없다. 이처럼 문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종파를 서로 달리하여 출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그 배경과 의미를 밝히려고는 하였으나, 여전히 '문벌귀족-범상종' 對 '왕실-화엄종'이라는 구도 속에서 의천의 출가를 비롯하여 당시 고려 정치·불교사를 이해하고 있다.

3. 의천의 출가의 정치·사상적 의의

의천이 태어나 활동한 시기는 태조 死後 왕실과 유력 가문 사이에서 지속되던 왕위 계승 문제가 顯宗(재위 1009.2.~1031.5.)의 즉위로 일단락 된 후로, 현종의 아들인 德宗(재위 1031.5.~1034.9.)과 靖宗(재위 1034.9.~1046.5.), 문종이 차례로 왕위를 계승하며 왕권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 이후의 왕위 계승도 현종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²⁸⁾ 이런 상황 속에서 문종 대에서 숙종 대에 걸치는 의천의 생애도 고려 전기 왕실과 정치 세력간의 영향과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천은 출가했을지라도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왕권 및 정치권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당시에는 가문과 가문, 왕실과 가문뿐만 아니라 왕실 또는 정치 세력과 불교계가 서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왕실을 비롯하여 귀족 가문에서는 ‘화엄종’ 또는 ‘법상종’ 등의 종단에 출가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천의 출가는 정치적·사상적 두 측면에서 각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의미의 중요성은 비슷할지라도, 각각의 의미의 성격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의의

먼저 현종 대에서 문종 대에 걸쳐 나타난 귀족가문과 왕실의 출가 양상을 살펴보자. 의천의 스승인 경덕국사 난원은 金殷傅의 아들로 곧 현종의 비인 元成太后와 元惠太后와 同母弟이다. 의천의 동생인 탕[규]은 이자연의 아들인 소현에게 출가하였는데, 이 소현은 의천과 탕[규] 모후인 인예태후와 同母弟로 의천과 탕[규], 소현은 숙질관계가 된다. 이처럼 의천과 난원, 소현과 탕[규]의 관계도와 가계배경만 봐도 의천의 출가에 정치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28) 류선영, 『고려 태조의 6왕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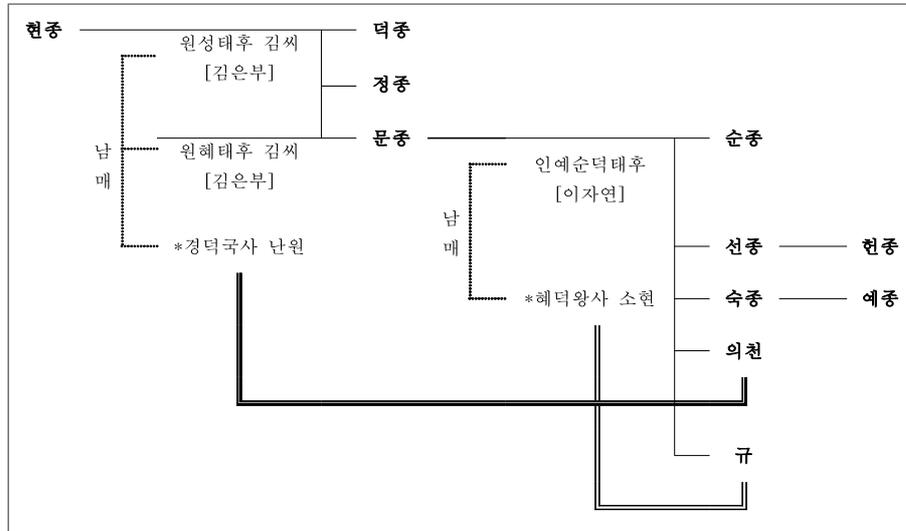


그림 2. 현종~문종대 왕실 및 출가승 관계도(필자 작)

당시 소현도 이자연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출가 이후 활동을 할 때, 인주이씨 가문의 영향을 받으며 활동을 하였다.²⁹⁾ 현재 사료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의 출신이 공교롭게도 이름 있는 가문이거나 왕실인 점에서 종교계와 정치세력의 유착관계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점은 있다. 의천이 왕실과 화엄종을 대표하여 출가하였다는 것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나, 난원과 소현, 의천, 규만 보더라도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왕실이나 귀족가문 어느 한쪽만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그 신분적 특성과 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종대 왕실의 출가와 관련하여 의천의 출가는 이후 나타나는 왕자들의 출가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³⁰⁾ 문종대에는 의천 외에도 왕실에서의 출가가 더 있었던 점도 유의해야 한다. 1070년에는 문종의 6자인 보응승통 탕[규]이 혜덕왕사 소현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법상종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탕[규]은 1112년에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거제현으로 유배되었다가 사망하였다. 문종의 10자인 총혜수좌 경은 생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실밖에 확인할 수 없다.

비록 탕[규]와 경은 의천에 비해 그 구체적인 활동을 알 수 없지만, 의천과 달리 화엄종이 아닌 종파의 승려가 되었다는 점을 보면, 의천이 왕실을 대표하여 화엄종으로 출가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문종 대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를 다양하게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는 다소 약했던 왕실과 화엄종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상종 등과의 관계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벌 귀족—법상종—소현’ 對 ‘왕실—화엄종—의천’ 이라고 하는 구도가 성립되기는 하였지만,³¹⁾ 이러한 구도는 ‘문벌귀족—불교 교단’ 對 ‘왕실—불교교단’ 이라는 큰 흐름에서 파생된 하나의 흐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29) 박현진,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치」,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10.

30) 이정훈, 앞의 논문, 2009.2; 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31) 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것이다.

또, 의천의 출가 이전의 고려 왕실에서의 출가는 태조의 여섯째 아들 증통국사뿐이다. 고려 사나 고려사절요 등 사료에는 증통국사 이후부터 의천의 출가 사이에 다른 왕자들의 출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출가가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출가가 정말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약 15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려 전기 왕실에서의 출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자체 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현존하는 자료상 태조 대부터 명종 대까지 왕실 자제로 출가한 승려는 19명으로, 의천 이전의 고려 전기 왕자의 출가로는 태조 대 증통국사가 유일하고, 문종 대 의천과 탕, 경 3명의 왕자들이 출가한 이후로 숙종 대 4자 징엄(澄儼)과 소군 현응(玄應) 2명, 예종 대 소군 지인(之印), 각예(覺倪), 각관(覺觀) 3명, 인종 대 4자 충희(冲曦)와 왕족 종린(宗璘) 2명, 의종 대 극세 승통(極世僧統) 1명, 명종 대 소군 선사(善思), 홍기(洪機), 홍추(洪樞), 홍규(洪規), 홍균(洪鈞), 홍각(洪覺), 홍이(洪貽) 7명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인다.³²⁾ 현종의 경우는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서 태어나 출가하였다가 환속하여 왕이 된 경우이다. 현종의 출가와 환속, 왕위 계승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점인 것을 감안하면,³³⁾ 고려 전기 왕실에서 왕자들의 출가는 많은 듯 하지만 문종 대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고려 전기에 왕자의 출가, 왕실에서의 출가가 드물었던 것은 고려 전기 왕위계승과 왕권의 안정화와 연관이 있다. 나라의 건국과 함께 고려 전기에는 왕위 계승과 왕권의 안정화가 급선무였으며, 실제로 고려의 왕권과 왕위계승은 현종 대에서 문종 대에 이르러서야 확립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확립될 때 까지는 왕위 계승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실의 일원을 왕실과 분리시켜 ‘출가’ 시키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에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불교와의 유착 관계는 왕의 보살계 수계나 사원 및 願刹 창건, 불교 의례 및 행사의 거행 등으로 이루어졌다.³⁴⁾ 또, ‘통일신라’ 말에 활동하던 선승(禪僧)들이 고려 전기까지 활동하고 있었고, 광종 대 승과의 실시나 정종 대와 문종 대에 출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등 승정의 체계도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서의 출가는 고려 중반에 다다라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천의 출가는 곧 ‘왕자 출신 승려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고려 전기 정치·불교사에서 그 의의가 남다른 사건이다. 의천의 출가는 문종의 아들인 ‘왕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 ‘佛法’에 歸依하여 求道와 解脫을 위해 이루어진 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뿐만 아니라 의천의 출가 이전의 정치적 상황까지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그의 출가는 비단 ‘왕후’ 한 사람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왕자 왕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이정훈, 앞의 논문, 2009.2, 96쪽.

33) 이정훈, 같은 논문, 2009.2, 103쪽.

34) 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32-39쪽.

2) 사상적 의의

의천의 출가의 사상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종대에 이르러서 왕실에서의 출가가 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이전의 불교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천의 출가 이전에 활동했던 승려들, 특히 왕사·국사의 지위에 오른 승려들과 의천의 출가 및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승려들의 내용을 1038년(靖宗 4)부터 1101년(숙종 6)까지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 전기 정종~숙종 대 승려 및 의천의 활동 내용

시기		승려들 및 활동 내용	의천의 활동
1038 ~1046	정종 4 ~문종 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8 소현, 이자연의 5자로 출생 • 1041 결응, 왕사 책봉 • 1045 해린, 승통 • 1046 해린, 궁궐에서 ‘유심묘의’ 강의 	
1047 ~1054	문종 1 ~문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7 결응, 국사 책봉 • 1048 정현, 왕사 책봉 • 1048 소현, 출가 (스승 해린) • 1049 소현, 북홍사에서 受戒 • 1053 결응, 입적 • 1054 정현, 국사 책봉, 입적 • 1054 해린, 현화사 주지 및 소현 따라감 	
1055 ~1064	문종 9 ~ 문종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6 해린, 왕사 책봉 • 1057 해린, 법호 더함 • 1058 해린, 국사 책봉 • 1058 난원, 왕사 책봉 • 1059 해린, 궁궐에서 백고좌회 개최, 법호 더함 • 1061 소현, 대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5.9. 출생
1065 ~1075	문종 19 ~ 문종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6 난원, 입적 • 1067 해린, 법천사로 하산 • 1069 소현, 중대사 • 1070 문종 6子 규[탱], 출가 (스승 소현) • 1071 해린, 입적 • 1071 소현, 해안사 주지 • 1075 소현, 미륵보살 탱화 모시고 예참궐의 및 재와 법석 열기 시작 (1096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5.5. 출가 (스승 난원) • 1069 우세승통 • 1073 「代世子集教藏發願疏」
1076 ~1083	문종 30 ~문종 37 /순종 즉위 / 선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9 소현, 內殿 法席의 講主가 됨 (宋 사신들의 무사 귀환 기원) • 1083 소현, 수좌에 오름 (선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7 「貞元新譯華嚴經并疏」 강의 시작 (1100년까지) • 1081.9.~1083.2. 宋 화엄승

	즉위	김제 金山寺 廣敎院에서 章疏 간행	淨源과 서신교류, 입송구법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조정의 반대로 좌절
1084 ~1095.10	선종 1 ~현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4 소현, 승통, 현화사 주지 이 이후에도 개국사·자운사 選場 주관, 大藏道場 講席 주관 • 1088 소현, 의천의 부탁으로 아미타경 관련 장소 간행 • 1089 소현, 현화사 중수 (1096년까지) • 1091 소현, 법형초 중조, 착수 • 1092 소현, 법형초 및 성유식론술기 필역, 유통 • 1095 소현, 숙종의 부름으로 仁王經 法住되어 講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5.4.8. 入宋 • 1086.6.18. 고려 귀국 • 1090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
1095.10. ~1105	숙종 즉위 ~숙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6 소현, 입적, 왕사 추봉 • 1105 德昌, 왕사 책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1 弘圓寺 9朝堂 낙성 • 1101.9. 입적, 국사 추봉

* 각 승려들의 비문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의천이 출가하기 이전까지 불교계의 상황을 보면, 정종 대부터 1065년(문종 19)에는 결응과 정현, 해린, 난원, 소현 등 쟁쟁한 승려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때는 대체로 정현과 해린, 소현 등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 종파를 떠나서 1041년부터 1058년 사이에는 승려들의 왕사와 국사 책봉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천 출가 이전까지는 왕사와 국사의 지위에 오른 승려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문도들의 활동까지 감안한다면 고려 전기에는 사료에서 확인되는 승려들의 활동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승려들의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곧 왕실에서의 출가의 필요성 문제와 연결된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전기 왕위계승과 왕권의 안정화는 현종 대에서 문종 대 사이에 확립이 되는데,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는 왕위 계승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왕실의 일원을 왕실과 분리시켜 ‘출가’ 시키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또한, 왕실에서의 출가를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하더라도, 의천의 출가 이전까지 고려 전기 불교계는 사실 이미 왕실의 출가가 아니더라도 고승들의 배출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로, 불안정한 왕위 계승과 왕권 속에서는 기존의 불교 종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종 대 중반에 들어서면 법상종단의 세력이 커지고, 이에 대하여 문종 대 이전의 왕위 계승의 혼란이 안정되고 사상계의 주도 및 재편을 통한 정치적 강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왕실에서의 출가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상적으로도 1050년대부터는 왕사, 국사로 책봉되었던 고승들이 하나 둘씩 입적함으로써, 불교계를 이끌 새로운 인물들이 요구되는 시기가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1065년 의천도 왕실을 대표하여 출가하였지만, 사상적으로도 왕실 출신의 출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의천이 출가한 이후에는 1066년에는 의천의 스승인 난원이 의천이 출가한 바로 다음 해에 입적을 하고, 법상종계에서는 1067년 해린이 하산하고 1071년에 입적함으로써 화엄종과

법상종은 양 종단을 이끌던 고승들의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엄종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천이 난원의 뒤를 이어 그의 문도 및 화엄종단을 이끌게 되고, 법상종은 인주이씨 가문의 소현이 해린의 상수제자로 그의 뒤를 이어 법상종단을 이끌게 된다.³⁵⁾

이런 점에서 의천의 출가를 본다면, 의천의 출가는 정치적으로는 고려 왕실을 대표하여 출가한 것도 맞으나, 이는 불교계의 상황도 왕실에서의 출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서 정치적·사상적으로 그의 출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의천은 이른바 약 500년간 ‘불교 국가’로 존속했던 고려시대의 수많은 승려들 중에서도 고려 정치·사상사적으로 영향력과 의의가 높은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러한 의천의 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도 많이 다루어졌으나, 정치적·사상적 역학적인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의천의 출가를 이 후의 활동과 연결 지어 출가 이후의 활동과 그 의의를 반증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진 경향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의천의 출가 당시의 자체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의천의 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의 출가는 기본적으로 문종의 결정으로 표현되는, 왕실에서 주도한 출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종이나 왕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천의 출가의 의의는 정치적·사상적으로 ‘왕자 출신 승려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의 중요성을 같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벌귀족—불교 교단’ 對 ‘왕실—불교교단’ 구도 속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었던 불교 교단이 문종 대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고승들이 하나 둘 씩 입적하기 시작하면서 왕실에서의 출가도 자연스레 더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왕자 출신으로서 의천에 대해서는 출가에 대해서 출가 절차나 수학 내용 등을 당대 다른 승려들과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의의를 더 살펴볼 수 있으며, 또 출가뿐만 아니라 이후의 활동들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35) 박현진, 앞의 논문, 석사학위논문, 2014.2, 18쪽.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宋史』, 『續資治通鑑長編』,
『朝鮮金石總覽』(조선총독부 편)
『海東金石苑』(劉燕庭, 아세아문화사, 1976)
『韓國金石全文』(許興植 編著, 아세아문화사, 198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1~4(李智冠 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4~1997).
건국대학교출판부 편, 『대각국사문집』(1974)
박용진 옮김, 『대각국사문집』(2010),
의천 저, 이상현 옮김, 『한국불교전서 대각국사집』(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류선영, 『고려 태조의 6왕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용진, 『大覺國師 義天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2.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1.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윤진,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정요근 외,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 역사비평사, 2019.
崔鳳春, 『海東高僧 義天研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12.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김용선, 「고려 승려의 일대기」, 『인문학연구』 7,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2000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 -왕실 출신 화엄종 5 국사(國師)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2011.3.
남동신, 「고려 중기 법상종(法相宗)[자은종(慈恩宗)]과 해린(海麟)」, 『한국사론』 6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9.9.
박윤진, 「高麗時代 승려의 血族間 師承과 그 意味」, 『한국사연구』 142, 2008;
박현진, 「고려중기 혜덕왕사 소현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치」,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박현진,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10.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2

‘고려 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와 정치·사상적 의의’ 토론문

심경순(전북연구원)

의천(1056~1106)은 1106년 46세로 입적하여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하여 왕실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불교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065년 11세에 출가, 화엄종 승려인 난원의 문하에서 화엄교학을 수학하였다. 난원 입적 후 1066년 1067년 13세에 화엄종의 승통이 되었다. 이후 송에서 1년 여의 구법활동(1085~1086)을 한 후 3천여 권의 불서를 가지고 귀국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불서들을 편찬 간행하였다. 1097년 개경 국청사에 주석하여 고려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의천에 관한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던 ‘출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정 주체와 배경, 정치적, 사상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 있다.

I. 1. 머리말 : 고려 시대 구분 : 발표자는 발표 논문 제목을 ‘고려중기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과 정치적 연관성’에서 ‘고려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출가와 정치 사상적 의의’로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려 후기의 시작을 명종대로 본다면,³⁶⁾ 변경 후의 제목이 좀 더 적절할 것 같다. 이와 관련 전·후기 시기 구분뿐만 아니라 의천의 생애 및 활동을 그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시기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⁷⁾

II. 1) 결정 주체 : 의천의 출가와 관련된 4개의 기록을 <표1>에서 분석하였다. 4개의 기록은 의천의 ‘출세지’ 수록 유무에 따라 양분되는데, 공통적으로 부왕인 문종이 출가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발표자는 결론적으로 출가 결정에 문종, 왕실, 정치 사회적 입장이 큰 비중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고, 결국 의천의 출가는 왕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문종이 왕자의 출가를 결정하게 된 정치적, 불교적 배경이 궁금하다.³⁸⁾

II. 2) 출가 배경 : 출가 배경에서 발표자는 ‘諸子’의 분석을 통해 인예태후 소생의 왕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인경현비 소생 왕자 왕도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집필자가 지적하였듯이 문종대 왕자의 출가는 의천 포함 3명 모두 인예태후 소생 왕자들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제자’ 분석의 의도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36)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2009, 96쪽.

37) 개인적으로 의천의 활동은 입송구법 활동을 기점으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기(1065~1084) : 출가 이후부터 입송구법 이전 활동. 화엄종 중심의 연구 및 강학

2기(1085~1086) : 입송구법 활동

3기(1087~1106) : 귀국 후부터 입적까지 활동. 불서편찬 및 간행, 천태종 개창

박용진은 의천의 생애와 활동은 ‘출가와 수학’, ‘입송구법과 제종 교학 교류기’, ‘귀국 후 불교계 활동과 해인사 은거’, ‘천태종 개창을 통한 불교계 재편과 흥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대각국사 의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5)

38)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외척세력이자 문벌세력이었던 이자연이 사망(1061년)을 왕권강화의 기회로 삼아 당시 귀족출신 승려들에 의해 장악된 불교교단에 왕실 출신 인물들을 출가시킴으로써 왕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출가에 있어 ‘공교롭게’ 태후 소생의 왕자들이 출가했다고 보기보다는 교단 최고 지위인 승통, 대선사에 오르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³⁹⁾ 상대적으로 가장 고귀한 신분인 태후 소생의 왕자들만 출가시킴으로서 문종의 보다 직접적인 교단 장악 의도가 담긴 ‘계획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Ⅲ. 의천의 출가의 정치·사상적 의의 : 문종대 의천 이외에도 2명의 왕자가 더 출가하였고, 그중 6子 규는 형 의천과 달리 법상종 승려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천을 포함한 왕자들의 출가는 왕실과 화엄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상종과도 일정 관계 유지라는 정치적인 측면이 내포해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각각의 분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규의 경우 이후 반란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사망한 점에서 문종의 삼론종 장악 및 관계 유지는 일정 부분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타 : 각주 4에서 발표자는 의천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강조하고자 속명인 ‘왕후’와 범명인 ‘의천’을 혼용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병용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목차에서도 의천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도 목차와 마찬가지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39) 왕자 출신 승려들은 승통이나 대선사가 되는 것에 제한이 없었고, 소군들은 원칙적으로 승통, 대선사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왕실이 불교를 통한 왕권강화 및 대외적으로 왕실의 불교적 믿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 왕자나 소군의 출가 중 왕자의 출가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훈, 앞의 논문, 2009, 96~104쪽)

메 모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
- 인조와 조정 신하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

이가희 / 전주대학교 박사과정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

- 인조와 조정 신하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

이가희**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변사건의 전개과정
 - 1. 고변 접수와 추국청 설치
 - 2. 고변 내용과 진술
 - III. 고변사건의 쟁점과 갈등
 - 1. 김장생과 이귀의 주장
 - 2. 추국청과 언관의 견해
 - 3. 인조의 입장과 처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인조 초반에 일어난 역모사건 중 송광유(宋匡裕)(1602-1629) 고변(告變)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고변사건은 1628년(인조 6) 12월 17일에 전라도 남원 출신인 송광유가 일부 호남 선비들의 역모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조의 재위 기간 내내 이러한 종류의 크고 작은 모반(謀反) 및 고변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괄의 난 이후에도 모반 단계에서 적발되거나 무고(誣告)로 판명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권의 불안정을 노출했다.¹⁾

* 본 발표문은 이가희,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사건 연구』(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08)의 내용 일부를 요약·수정하였음.

**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김우철, 「1629년 이충경 모반 사건」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경인문화사, 2013), 3쪽.

송광유 고변사건은 이미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이 사건을 언급한 기존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건을 개관하여 소개한 연구²⁾, 둘째, 고변문서에 등장하는 예언과 유언비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³⁾, 셋째, 법률제도적인 관점으로 송광유 고변사건의 전개과정을 다룬 연구⁴⁾가 있다. 즉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주로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⁵⁾과 『인조실록』을 바탕으로 송광유 고변사건의 개요, 예언과 유언비어와 관련된 내용 및 추국의 절차적 과정이 연구되었다.

『추안급국안』의 자료적 성격상 심문 내용이 중심이므로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처분 과정과 그에 따른 논쟁 등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송광유 고변사건의 전체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

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본 사건을 바라보는 집권층의 시선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계 김장생(金長生)과 연평부원군 이귀(李貴)의 변론, 추국청과 언관의 견해, 국왕 인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송광유 고변사건의 수습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옥사(獄事) 처리의 쟁점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송광유가 제출한 고변문서의 주요 내용과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송광유의 행적과 구체적인 고변 동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변사건의 쟁점과 사건 처리에 따른 집권층 내의 이견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왕과 신하간의 고변사건에 대한 인식 차이의 일면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고변사건의 전개과정

1. 고변 접수와 추국청 설치

송광유 고변사건은 1628년(인조 6) 12월 17일을 시작으로 1629년(인조 7) 3월 13일에 송광유가 반좌율(反坐律)⁶⁾로 처형될 때까지 약 3개월간 진행했다. 12월 17일 승정원은 비밀리에 한글

2) 백승중, 『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2012); 김건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실학』 44(역사실학회, 2011).

3) 김우철,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경인문화사, 2013);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 上(북코리아, 2016);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4) 전경목,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5) 『추안급국안』은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91년 동안 왕조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각종 역모, 저주, 왕릉방화 사건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하여 심문한 기록이다. 인조대의 『추안급국안』에는 인조반정 이후 총 30건의 역모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병자호란 이전까지는 23건, 병자호란 이후에는 7건의 역모사건이 보인다. 본 발표문에서는 영인본 제4책에 실린 「戊辰宋匡裕獄事文書」와 「己巳靛致獄事文書」라는 제목의 심문 기록이 주 대상이다. 번역본은 2014년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2로 발행된 총 90권 중 『추안급국안』 제10권(김우철 역주, 흐름, 2014)이다. 이하 『추안급국안』의 인용문과 쪽수는 이 번역본에 의거했다.

6) 반좌율은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刑法典)인 『대명률(大明律)』 「무고(誣告)」편에 실려 있는 조문인데, 조선은 『대명률』을 적용해 죄인을 처벌했다. 송광유는 연루자들의 심문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자 무고죄가 적용되어 교형(絞刑)에 처해졌다.

로 된 고변문서를 인조에게 전달했다.⁷⁾ 고변문서는 1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전라도 남원에 사는 송광유가 작성한 문서였다. 이 고변문서는 일부 호남 선비들의 역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씨 왕조가 망하고 허씨 진인(眞人)⁸⁾이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문서에는 허씨 진인을 국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사전 모의 계획과 주동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었다. 인조는 즉각 대신과 의금부의 당상관,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 좌·우포도대장을 급히 소집했다.⁹⁾

추국청을 설치한 당일 바로 1차 심문을 실시했고, 추국에 참여한 관원은 당상관, 문사낭청(問事郎廳), 별형방(別刑房), 문서차지(文書次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에 체류 중인 영의금부사 이원익(李元翼)과 병으로 불참한 행(行) 관의금부사 정창연(鄭昌衍)을 제외하고 19명의 추국관이 참석했다. 본 옥사에서는 고변자인 송광유를 포함하여 총 32명이 9차례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표 1〉 송광유 고변사건 추국 일람표

회차	일자	심문 대상자	비고
1차	1628. 12. 17.	송광유	고변자
2차	12. 18.	윤운구, 유인창	
3차	12. 22.	경춘, 유지호	
4차	12. 24.	이의룡, 우전, 소신생, 송홍길, 송방지 송영걸 이유, 용부, 김득, 김행, 김익, 이상운	
5차	12. 25.	무혐의자 논의	추국 대상자 없음
6차	12. 26.	원두추, 용남, 민안, 유선창	대질심문 진행: 송광유와 윤운구 유인창, 민안, 원두추
7차	12. 27.	조평, 최홍성, 최후헌, 임기, 임단, 임위, 원두각 계육, 이상운, 유인창	유인창 재조사
8차	12. 30.	허의	
9차	1629. 01. 22.	김지수	

* 출처: 전경목의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의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 97쪽에 수록된 표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더했다.

체포 명령은 크게 12월 17일, 18일, 27일에 내려졌으며, 13명의 가도사는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의 각 지역으로 파견되었다.¹⁰⁾ 심문관들은 다른 죄인들이 압송되기 전에 고변자 송광유를 12월 17일에 먼저 추국했다.

7) 『승정원일기』 인조 6년 12월 17일.

8) 김우철은 각종 감결(鑑訣)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인의 등장을 조선후기 변란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광유 고변사건보다 앞 시기에 일어난 정여립(鄭汝立)·길운절(吉雲節)·유효립(柳孝立) 역모사건의 전개를 서술하면서, 송광유 사건에서 진인이 모반의 추대 대상으로 처음 거론되었음을 설명했다.(김우철, 앞의 책, 81-87쪽 참조).

9) 김우철 역주, 『추안급국안』 제10권(호름, 2014), 15쪽.

10) 추국청이 설치된 12월 17일에 바로 10명의 가도사가 전라도 지역인 여산·전주·고부·담양·남원·회순·나주·영암과 경상도 지역인 사천으로 파견되었다. 다음 날에는 2명의 가도사가 순창과 남원으로 향했다. 그 후 12월 27일에는 1명의 가도사가 함경도 종성으로 보내졌다.

2. 고변 내용과 진술

우선 송광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남원에 거주하는 송광유의 본래 이름은 송지순(宋之洵)이며 심문 당시 나이는 27세이고 직역은 무예를 익히는 업무(業武)였다. 본관은 여산 송씨(礪山宋氏)로 송광유의 증조부는 송사련(宋祀連)이고, 구봉 송익필(宋翼弼)의 열손(孽孫)이었다.¹¹⁾ 송취대(宋就大)와 첩 사이에서 2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¹²⁾

송광유는 고변문서에서 ‘이씨 왕조의 멸망 예언’과 ‘변란 계획’을 고발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윤운구에게 변란 참여를 권유 받으면서 듣게 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운구는 전(前) 공조좌랑으로 역모의 주모자로 지목되었는데 송광유의 부친인 송취대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송광유는 윤운구를 1623년(인조 1) 또는 1624년(인조 2) 중 오랜만에 상견하였고, 그 이후부터 윤운구를 따라다니며 지낸 관계였음을 진술했다.

송광유는 윤운구에게서 김지수(金地粹)를 제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역모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광유의 진술에 의하면, 윤운구는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역할을 했으므로 대사헌이나 이조판서에 제수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와 달리 다른 동료들이 오히려 높은 관직에 임명되고 자신은 겨우 정6품 사과(司果) 자리에 제수된 현실에 분한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아울러 윤운구가 반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 소홀한 대우를 받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어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고자 몇몇 사람들과 결탁해 역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¹³⁾ 송광유는 윤운구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대한 불만을 역모의 동기로 고발한 것이다.

이어 송광유는 공초에서 1625년(인조 3) 7월에 윤운구·유인창(柳仁昌)·조평(趙平)·유선창(柳善昌)·최홍성(崔弘誠) 등이 순창에 위치한 제암정(霽巖亭)에 모여 변란 계획을 의논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허씨 진인에 대한 이야기, 점쟁이 민안(閔顔)을 불러 변란의 길흉을 점친 일, 구체적인 변란 계획 등을 자신도 참석한 자리에서 상세히 말해주었다고 주장했다.¹⁴⁾ 송광유의 진술에 의하면 이 당시가 바로 윤운구가 송광유에게 김지수를 죽이도록 청탁하고 역모의 내막을 자세히 말해준 시점이다. 이러한 역모 계획을 김지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있음으로 이를 막기 위해 윤운구가 자신에게 김지수 제거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때 윤운구와 그의 동료들은 참언(讖言)을 근거로 이씨 왕조의 쇠망할 징조를 거론하며, 허

11) 사계 김장생은 문인인 유즙(柳楫)을 시켜 역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윤운구(尹雲衢)를 변론하는 상소를 대신 짓기도 했는데, 이 상소문에서 송광유를 송익필의 열손이며 자신의 노비라고 지칭했다. 而匡裕乃臣亡師宋翼弼之孽孫, 且臣之奴也. 陰兇悖惡, 行同禽獸, 雲衢之斥絕匡裕, 亦臣之所曾知也. (『백석유고(白石遺稿)』 제3권, 「신구윤운구소(伸救尹雲衢疏)」). 또한 남원 사람 충의위(忠義衛) 이유(李泐)의 공초 내용 중에서도 송광유를 사노(私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김우철 역주, 앞의 책, 95쪽. 이유의 진술.)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송광유의 모친은 천첩(賤妾)으로, 김장생의 여종 출신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2) 송광유의 부친인 송취대는 송익필과 첩[側室] 사이에서 태어난 서얼이었다. 송취대는 본처와 첩을 두었는데 본처의 아들은 송지연(宋之演)으로 송광유의 적형(嫡兄)이었다. 또 다른 형인 송지항(宋之沆)은 송광유와 같이 첩의 소생이었다.

13) 김우철 역주, 앞의 책, 16쪽. 송광유의 고변문서.

14) 김우철 역주, 같은 책, 36-41쪽. 송광유의 진술.

씨 진인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주요 참언으로는 이씨 왕조의 300년 수명설, 기이한 자연현상, 망기자(望氣者)의 점술, 허씨 진인의 출생과 운명, 민간의 노동요, 관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송광유는 윤운구의 무리가 허씨 진인을 추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란 계획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고변문서에 변란 근거지와 모의 인물 및 살인 계획 등을 자세히 나열했으며, 변란은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한양·경기도 등에서 전국적 규모로 일으킬 계획임을 상세히 거론했다.

송광유는 고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윤운구의 무리인 원두추(元斗樞)·임기(林曩)·최홍성이 자신을 살해하려한 계획을 알게 되면서 고발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두추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녹훈(錄勳)된 원두표(元斗杓)의 동생이다. 송광유는 원두추가 허씨 진인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자신을 결박해 살해 위협을 가한 인물로 주장하고 있다.¹⁵⁾

이런 일을 계기로 송광유는 역모의 주요 주모자인 윤운구·원두추·최홍성·임기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과 전해들은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고변문서에 모조리 집어넣었다. 이후 송광유를 제외한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문에서 송광유의 주장을 토대로 연루자들을 추궁했다. 그러나 연루자들의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했다. 허씨 진인설의 주인공인 허씨의 정체와 소문의 진실¹⁶⁾, 송광유의 행적 등이 드러남으로써 송광유의 고변 동기의 이면이 드러났다.

연루자들의 진술 속에서 송광유는 형 송지항을 살해한 혐의와 남의 첩을 빼앗아가는 비행을 저질러 패륜아라고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글씨를 새기거나¹⁷⁾ 금구 관아 및 담양 등에 머물면서 참빗을 잘 만드는 솜씨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노비를 소유하였던 인물이기도 했다. 또한 그가 고발한 자들은 양반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층이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교제한 사이거나 한두 번 마주쳤던 사람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송광유의 고변 동기를 추정하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관비 후양춘(後陽春)이 간통해 도망간 사실을 거론한 자들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고변한 것이다. 이는 주요 혐의자인 윤운구·원두추와 송광유의 누이인 계옥(季玉)까지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송광유의 무고 이유였다. 송광유는 후양춘을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그녀와 달아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로 인해, 결국 후양춘이 관노비 문서에 다시 기재되도록 했기 때문에 원망을 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옥은 송광유가 후양춘을 속량(贖良)하고자 했는데 몸값을 낼만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공신(功臣)이 되어 관노비를 받을 궁리를 했다는 점을 밝혔다.¹⁸⁾

15) 김우철 역주, 같은 책, 43쪽. 송광유의 진술.

16) 허씨 진인과 관련된 소문의 진위는 이가희, 앞의 논문(2020.08), 32-35쪽 참조.

17) 임천 군수 황일호(黃一皓)와 송광유는 옥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송광유는 문재(文才)가 조금 있고 글씨를 잘 새기는 솜씨가 있어서 황일호의 아버지인 추포 황신(黃愼)의 묘비에 글을 새겨주기도 했다. 楸灘吳相秉銓, 荐拜工曹佐郎, 全州判官. 遷林川而有宋光裕事, 光裕者, 卽故龜峯處士之孫也. 薄有文才, 且善於刻字, 公爲文敏公墓刻接引之.(『지호집(芝湖集)』 제12권, 「지소행장일사(芝所行狀逸事)」).

18) 김우철 역주, 앞의 책, 191쪽. 계옥의 진술.

두 번째 고변 목적으로功名심(功名心)이 작용했다. 송광유는 명나라 장군 모문룡(毛文龍)을 배어 죽이자는 상소를 인조에게 올리기도 했고¹⁹⁾ 이어 계옥에게는 공신(功臣)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 아울러 송광유가 일찍이 변경 지역인 평안도에 파견되는 일에 지원했으나 탈락했고, 정묘호란 때는 병사로 출병하려고 상소를 올렸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송광유가 공을 세우기 위한 다른 대책으로 윤운구·송지항 등이 허씨 진인을 추대하려는 모의를 했다면서 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²⁰⁾

송광유는 윤운구와의 대질심문에서 윤운구가 이전에 조정과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을 비난했던 불온한 발언들을 폭로하면서²¹⁾ 인조와 조정에서는 윤운구의 여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송광유의 처벌을 중심으로 이견과 갈등을 일으킨 쟁점들을 논구함으로써 본 고변사건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Ⅲ. 고변사건의 쟁점과 갈등

송광유의 처벌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처분 내용을 서술하고자한다.²²⁾ 추국청은 연루자들을 심문하면서 송광유의 고변 내용에 거짓이 있음을 의심했고 인조에게 옥사의 실정을 보고했다. 심문 내용을 보고받은 인조 역시 송광유의 고변 내용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있음을 인지한다. 하지만 인조는 오히려 윤운구와 그를 변호하는 신하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무고(誣告) 혐의가 짙은 송광유를 엄벌하려하기보다는 석방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 이는 송광유의 처벌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그렇지 않으려는 인조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다.

<표 2> 사건 처리 과정

순서	일자	내용
1	1628.12.17.	송광유의 고변문서 접수, 1차 추국 시작
2	1629 1월 중	김장생의 윤운구를 변론하는 편지(1)
3	1629.01.09.	이귀의 차자(1)
4	01.11.	인조 → 이귀의 차자 비판
5	01.12.	도원찰방 조준중의 상소 → 친구 윤운구 변론
6	01.15.	이귀 병조판서 파직
7	01.17.	이귀의 차자(2)
8	01.22.	- 9차 추국 종결

19) 『인조실록』 4년 12월 27일.

20) 김우철 역주, 앞의 책, 191-192쪽. 계옥의 진술.

21) 송광유는 윤운구가 조정의 담배 금지를 불평한 일, 조정을 비판하는 시(詩)를 지은 일, 서얼 차별 문제 등을 언급한 일을 윤운구와의 대질심문에서 밝혔다. 이가희, 앞의 논문(2020.08), 40-43쪽 참조.

22)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추안급국안』을 비롯하여 김장생의 문집인 『사계전서(沙溪全書)』에 수록된 편지, 연안이씨 문중에서 발행한 이귀의 상소문 모음집인 『이충정공장소(李忠定公章疏)』 등을 참고하였다.

		- 인조의 비망기(죄인 처결 논의) - 윤운구 귀양, 송광유 석방
9	01.23.	인조 → 송광유 변호
10	01.26.	- 김경현의 고변문서(꺄치의 한글문서) 접수, 1차 추국 시작 - 조존중 옥사 마무리
11	02.04.~02.06.	김경현의 고변으로 재수감된 윤운구 등 혐의자 고신
12	02.06.	- 꺄치 고변사건 추국 종결 - 김경현 포상 논의
13	02.07.	- 이귀 → 인조의 특명으로 병조판서 제수 - 꺄치, 당고개에서 교형(絞刑) - 이귀의 조존중을 변호하는 차자(1) - 윤운구의 죽음
14	02.08.	이귀의 조존중을 변호하는 차자(2)
15	02.09.	이귀와 김류의 대립
16	02.11.	김경현 포상
17	02.18.~03.03.	송광유 처벌 관련 사헌부의 계사
18	02.18.~03.06.	송광유 처벌 관련 사간원의 계사
19	03.06.	인조 → 송광유 처벌 승인
20	03.13.	송광유, 당고개에서 교형
21	3월 이후	김장생의 윤운구를 변론하는 편지(2)
22	1630.01.22.	송광유를 변호하는 익명서 투서됨

1. 김장생과 이귀의 주장

김장생은 자신의 문인 윤운구를 위해 조정 대신들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내 변론하면서 송광유의 무고를 비판했다. 이귀 역시 사돈 관계²³⁾인 윤운구의 억울함과 송광유의 무고를 비판하는 차자(笱子)를 세 차례 올렸다. 주모자로 지목된 윤운구와 밀접한 관계인 김장생과 이귀의 변론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장생은 어린 시절 송익필의 문인이었으며, 이후 이귀와 함께 율곡 이이(李珣)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 서인 정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다. 호남에서 멀지 않은 연산(連山)에 거주하고 있던 김장생은 1629년(인조 7) 1월 중 해창군 윤방(尹昉), 신흘(申欽), 영의정 오윤겸(吳允謙), 좌의정 김류(金瑬), 병조판서 이귀, 예조판서 서성(徐省), 이조판서 장유(張維) 등 최고위 대신들에게 윤운구의 무죄를 변론하는 편지를 보냈다.

첫 번째 편지의 서두에 윤운구가 경망스럽고 생각이 깊지 못하지만 이괄의 난 이후로 스스로 의병(義兵)이 되어서 국난이 발생하면 달려 나가길 원했다며 윤운구의 충심(忠心)을 언급했

23) 윤운구는 이귀의 첫째 아들인 이시백(李時白)의 처남으로, 즉 윤운구의 누이동생이 바로 이귀의 며느리이다. 이귀와 윤운구 두 집안은 사돈 간이었다.

다. 이어 윤운구와 송광유의 관계에 대해 김장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은 늘 송광유의 사람됨을 미워했기에 윤운구가 송광유와 가깝게 지낸 점에 불만스러웠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윤운구는 송광유가 자신의 외조카 이한(李瀾)²⁴⁾이 아끼던 금구 관비 후양춘과 간통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관계를 끊고, 이 일로 인해 송광유는 윤운구에게 원한을 갖고 이처럼 무함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아울러 윤운구를 비롯한 호남의 죄 없는 선비들까지 연루시켜 고발한 송광유를 비판했다.²⁵⁾

이어서 김장생은 송광유가 처형된 1629년 3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영의정 오윤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1629년 2월 중에 이미 윤운구도 고신(拷訊)에 의한 후유증으로 죽은 이후였다. 오윤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송광유의 고변 계획을 송광유의 누나인 계옥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김장생은 송광유가 전라도와 충청도 사이에서 윤운구가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을 거짓으로 퍼뜨렸고, 여기에 자신의 문인들인 임위(林埜)와 조평(趙平)까지 무고하게 끌어들이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편지를 보내는 것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친구인 윤운구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던 도원찰방(桃源察訪) 조존중(趙存中)조차도 국문이 완결되기도 전에 말단 관리가 옥사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귀양을 보낸 일을 문제 삼았다. 김장생은 앞으로 죄 없는 선비들이 피해를 입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영의정 오윤겸에게 당부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이다.²⁶⁾

다음으로 병조판서 이귀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옥사와 관련된 차자를 올렸다. 두 차례는 1629년 1월 9일과 1월 17일에 윤운구 및 호남의 선비들을 변호하는 차자를 올렸고, 세 번째는 윤운구를 변론했다가 죄를 받은 도원찰방 조존중을 위한 차자를 올렸다. 우선 추국 진술에서 윤운구와 함께 이귀의 손자인 이각과 이한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기에 이귀 역시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귀가 차자를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1년 전부터 송광유의 고변 계획을 대략이나마 눈치 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귀는 1월 9일 차자에서 1627년(인조 5) 손자 이각으로부터 전달 받은 편지를 보고 송광유의 고변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편지는 송광유의 누나인 계옥이 금구 현령 이각에게 전해 준 것으로, 조만간 공신들도 모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귀는 이 편지를 전해 받고도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발설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몇몇 동료들에게만 편지를 보여주었다고 해명했다.²⁷⁾

그러나 1년 뒤 송광유가 실제로 고변을 하면서, 자신의 목인이 윤운구를 비롯한 호남 선비들에게 큰 화근이 되었음을 자책하면서 송광유의 흉악함을 고발하는 차자를 올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귀는 송광유가 건강부회한 말과 뜬소문을 끌어 모아 무고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24) 이한(李瀾)은 병조판서 이귀의 손자로, 이시백과 첫째 부인인 윤진(尹軫)의 딸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수곡집(壽谷集)』 권6 「묘표(墓表)」).

25) 1629년 1월에 김장생이 조정의 최고 대신 앞으로 편지를 보낼 당시 신희의 경우, 6개월 전인 1628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사계전서』를 편찬할 당시 착오로 보인다.(『사계전서』 제3권, 「여삼공윤가회(방)신경숙(흥)오여익(윤겸)급이옥여서현기(성)김관옥장지국(與三公尹可晦(昉)申敬叔(欽)吳汝益(允謙)及李玉汝徐玄紀(淸)金冠玉張持國)」 제44권, 「부록(附錄)」, 연보(年譜)).

26) 『사계전서』 제3권, 「여오여익(與吳汝益)」.

27)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국역 이충정공장소』 제3권(연안이씨 의정공 정화과 중중, 2019), 229쪽.

윤운구 등이 결코 변란을 피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²⁸⁾ 특히 이귀는 관련 소문의 진상과 당시 호남 지역 선비들의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⁹⁾ 그는 기축옥사 이후 호남 선비들이 조정에서 배척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호남 선비들이 조정 진출과 관리 등용 등에서 차별받은 현실을 거론했다.

또한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이후 몇 명의 호남 인사들이 다시 변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는데,³⁰⁾ 당시 금구 현령이었던 이각도 이 일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이귀는 호남 인사들이 국난을 대비하기 위해 맺은 맹약 행위를 송광유가 역모 행위로 왜곡했고, 이를 당시 민간에 유포된 허씨 진인에 대한 소문 등을 엮어서 무고한 것으로 보았다.³¹⁾ 즉, 송광유의 고변문서에서 언급된 변란 계획이 사실은 호남 인사들의 맹약에서 반란 도모로 왜곡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귀의 차자에 대한 인조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었다.³²⁾ 인조는 반정공신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일으키는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변호하는 이귀에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사간원과 사헌부는 옥사가 끝나기도 전에 차자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이귀의 파직을 요청했다.³³⁾

병조판서에서 파직된 이귀는 이틀 뒤인 1월 17일에 재차 윤운구와 호남의 선비들을 신구(伸救)하는 두 번째 차자를 올렸다. 현 조정에서 송광유의 무고한 말에 시비를 논하지 않고 있으며, 추국 중에 변론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무고한 송광유에게 죄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변론을 망언이라 치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를 통해 무고 사건에 대해 조정 대신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며, 송광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호남 선비들의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³⁴⁾

1629년 2월 7일에는 인조의 특명으로 이귀는 다시 병조판서에 제수되면서,³⁵⁾ 2월 8일에 조준중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변론을 이어갔다. 이귀는 조준중이 역적을 옹호한 형률을 적용 받았는데, 그의 상소는 윤운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죄가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병조판서라서 죄를 면해주고 미관말직인 조준중만 죄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자신도 조준중과 똑같이 장형(杖刑)을 받기를 청하면서 그의 형(刑)을 감해주기를 요청했다.³⁶⁾

이처럼 이귀는 인조의 비판과 병조판서를 파직당하면서도 차자를 올려 윤운구와 호남 선비

28)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같은 책, 229쪽.

29) 大抵湖南士子, 自己丑以後, 最爲朝廷之所擯斥, 入仕者輒遭彈駁, 赴科者, 例被停舉, 結髮讀書, 皓首禁錮. 而至於昏朝則又有金克誠金佑成輩, 附托權奸, 鍛鍊組織, 無所不至, 咸懷惴恐, 莫保朝夕. 歲月既久, 志氣頓挫, 抑而不揚, 而又無先生長者爲之倡導, 故有志有才者, 或放意於詩酒, 或流入於曠達, 發言行事, 頗有不中程式者.(『이충정공장소』, 230쪽).

30)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앞의 책, 231-233쪽;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24권, 「송광유무고지옥(宋光裕誣告之獄)」.

31)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같은 책, 231-233쪽.

32) 『승정원일기』 인조 7년 1월 11일.

33) 『대동야승(大東野乘)』 「묵재일기(默齋日記)」 1.

34)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앞의 책, 252-253쪽.

35) 『인조실록』 7년 2월 7일.

36)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9일; 『대동야승』 「묵재일기」 1; 「응천일록」 4; 『연려실기술』 제24권, 「송광유무고지옥」.

들을 변론하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 하지 않는 조정 대신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1629년 2월 9일에 이귀는 추국청의 책임자인 김류(金瑬)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급급히 마무리한 책임을 지적했다. 이귀 입장에서는 추국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번 9차례 추국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김류를 대면할 때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류 역시 죄인들을 모함할 목적으로 죄를 주고 옥사를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귀는 이러한 김류의 해명을 듣고도 인조와 여러 대신들 앞에서 김류를 힐책했다. 그러자 인조는 자신의 면전에서 대신을 꾸짖고 윤운구 등을 구제하려고 한 이귀를 추고하라고 명하며 바로 파조했다.³⁷⁾ 이 과정에서 이귀와 김류 사이는 더욱 틈이 벌어졌고 이후 김류는 세 차례에 걸쳐 사직을 하려 했으나, 인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³⁸⁾

이귀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 송광유의 무고가 확실함에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 관원들에게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윤운구와 호남 선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바라본 이귀는 차자를 올려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2. 추국청과 언관의 견해

송광유로 인해 고발된 혐의자들의 심문은 1629년 1월 22일에 실시된 9차 추국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추국청은 각 죄인들의 죄목과 형량을 논의해 인조에게 보고했다. 인조는 윤운구·유인창·민안·최홍성이 요망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조정을 원망하며 욕한 죄는 분명하다고 판단하여³⁹⁾ 최북방인 함경도로 유배를 보내도록 명했다. 그러나 1629년 1월 26일에 김경현(金敬賢)이 제출한 고변문서에 이들이 역모를 모의했다는 혐의가 거론되면서 다시 체포되었다.⁴⁰⁾ 추국청은 그들의 여죄를 캐기 위해 재심문을 진행했고, 1629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고신을 진행했다. 윤운구·유인창은 이전보다 혹독한 심문을 받아 사망하고 말았고 민안과 최홍성은 유배형에 처했다. 추국청에서는 옥사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계(議啓)를 올리며, 1629년 2월 6일에 인조는 추국을 종료하도록 결정했다.⁴¹⁾

김경현의 고변이 있기 전, 추국청은 연루자들의 처분을 논의하면서 그중 송광유에게는 무고죄를 적용할 것을 인조에게 요청했다.⁴²⁾ 그러나 인조는 송광유의 고변에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헌부와 사간원 역시 송광유에게 무고죄로 처벌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인조에게 건의했다. 사헌부는 1629년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37) 『인조실록』 7년 2월 9일.

38) 『인조실록』 7년 2월 28일.

39) 김우철 역주, 앞의 책, 214-217쪽; 『인조실록』 6년 12월 18일; 『승정원일기』 인조 7년 1월 22일.

40) 1629년 1월 26일에 김경현은 부안에 사는 사촌 여동생인 낫치로부터 역모의 정황이 담긴 한글 편지를 전달 받아 곧바로 승정원에 고변했다. 내용은 낫치의 남편인 김홍원과 윤운구·유인창 등이 제암정에 모여 역모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초 과정에서 낫치가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낫치가 교형에 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된다.

41) 김우철 역주, 앞의 책, 272-300쪽; 『인조실록』 7년 2월 6일.

42) 김우철 역주, 같은 책, 217쪽.

15차례의 계사(啓辭)를 올렸으며, 사간원도 1629년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계사를 집요하게 올렸다.⁴³⁾

사헌부가 주장한 송광유의 반좌율 처벌에 대한 이유를 종합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송광유의 고변에 허실이 뒤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 결과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송광유의 고변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적용해 반좌율로 처벌해야 함을 주장했다.⁴⁴⁾ 또한 만일 송광유가 윤운구 등이 요상한 말을 퍼뜨리고 조정을 비방한 내용만을 고변했다면 죽은 윤운구에게만 죄가 있고 송광유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문 결과 윤운구 등이 모역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송광유가 무고했다고 보았다.⁴⁵⁾

두 번째는 국법에 반좌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남을 함부로 모함하지 않는 것인데 만일 이 형률을 폐기한다면 뒷날에 폐단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임을 인조에게 거듭 피력했다.⁴⁶⁾ 그 폐단에 대해 앞으로 고변이 원한을 갚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⁴⁷⁾

그러나 인조는 1629년 2월 28일에 송광유의 고발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니 반좌율로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처벌 요청을 승낙하지 않았다.⁴⁸⁾ 인조는 송광유의 고변에 진실된 내용이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송광유에게 반좌율 처벌까지는 내리지 않으려 했다.

사간원은 송광유가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좌율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공론(公論)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⁹⁾ 그러면서 인조에게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며 언관을 배척하는 반응 등을 보이는 것이 신하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⁵⁰⁾

하지만 인조는 양사가 올린 30회 이상의 계사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광유 처벌을 논열한 언관들은 자신의 직임을 체차시켜 주길 인조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사의 관원들은 인협하고 사직한 상황에서 홍문관 부제학 정경세(鄭經世)도 나서서 차자를 올려 송광유의 처벌을 간언했다.⁵¹⁾ 이렇게 양사가 직임을 걸고서 자신들의 의견대로 처리해야함을 주장하는 것은 공론을 대변하고 있다는 언관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인조는 결국 1629년 3월 6일이 되어서야 송광유의 처벌을 마침내 재가한다.⁵²⁾ 인조가 송광유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⁵³⁾ 송광유는 무고죄로 1629년 3월 13일 당고개에서 교수형에 처했다.⁵⁴⁾

43)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월 3일; 5일; 6일.

44)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9일; 3월 3일; 5일; 6일.

45)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2일.

46)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5일; 26일; 27일; 28일.

47)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3일; 24일.

48)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8일.

49)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8일.

50)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0일.

51) 『우복집(愚伏集)』 별집(別集) 제1권, 「처치양사차[기사](處置兩司筭[己巳])」.

52) 『승정원일기』 인조 7년 3월 6일.

53) 『승정원일기』 인조 7년 3월 10일.

3. 인조의 입장과 처분

인조는 이귀의 변론과 언관의 계속된 논박에도 줄곧 다른 의견을 견지했다. 이귀와 언관들은 송광유의 거짓 고변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인조는 윤운구의 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송광유의 처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겨 날 수밖에 없었다. 인조가 송광유를 처벌하려 하지 않으려 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인조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 고변사건의 처리 과정을 바라보는 인조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짓이든 사실이든 간에 역모라고 한 이상 신하된 자로서는 사소하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역모를 다스리면서 아이들 장난처럼 처리한 결과, 도리어 보통의 나추(拿推)보다도 못하였으니, 너무도 놀랍다. 병조판서 이귀는 더욱이 차자까지 올려 구제하려고 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원훈(元勳)[이귀]의 행위가 이러하니, 나라의 기강이 진작되지 못한 것이 괴이할 것 없다. 마땅히 파추(罷推)하여 후인을 경계시켜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일단 그대로 둔다. 승정원은 그리 알라.⁵⁴⁾

1629년 1월 11일 승정원에 내린 인조의 비망기이다. 인조는 윤운구를 비롯한 호남 선비들의 무죄를 변론한 병조판서 이귀에 대해 반정공신이면서 역모사건을 느슨하게 여기는 점을 개탄했다. 아울러 인조는 이번 고변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한 신하들에게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고변사건을 아이들 장난과 같이 처리한다고 비유하며 보통의 문초보다도 못하다고 추국 참여 신하들을 질책했다.

이어서 9차 추국이 종료된 다음 날인 1629년 1월 23일 사헌부가 송광유의 반좌율 처벌을 요청하는 계사를 올렸다. 이에 대해 인조는 송광유의 고변에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에 모두 허망한 말이 아니므로 사헌부의 논열이 지나치다며 반좌율 적용을 거부했다.⁵⁶⁾ 인조는 윤운구 등이 국왕과 조정을 비방하고 욕한 내용을 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 점이 송광유의 처벌 요청을 재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이다.

특히 인조에 대한 창읍왕(昌邑王) 비유는 인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내용으로 보인다. 송광유의 공초에 따르면, 윤운구가 “반정을 일으키는 일이 ‘포학함으로 포학함을 바꾼다.’⁵⁷⁾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마땅히 창읍왕의 고사⁵⁸⁾를 행해야 하네.”⁵⁹⁾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54) 『대동야승』 「응천일록(凝川日錄)」 4.

55) 『승정원일기』 인조 7년 1월 11일.

56) 『승정원일기』 인조 7년 1월 23일.

57) 이는 백이숙제 고사에 나오는 구절로 원문은 '이포역포(以暴易暴)'이다. '이포역포'는 포학함으로 포학함을 대체했다는 말이다. 주 무왕(周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나라를 떠받들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러워하여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만 캐먹었는데, 급기야 굶어 죽기 직전에 “저 서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뜯노라. 포학함으로 포학함을 대체하고서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도다.[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사기(史記)』 제61권, 「백이열전(伯夷列傳)」).

58) 창읍왕은 중국 한나라 무제(武帝)의 손자 유하(劉賀)이다. 소제가 죽은 뒤 광광(霍光)에 의해 창읍왕이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 광광은 창읍왕의 방종하고 음란한 행실을 이유로 폐위시키고 다시 뒤를 이어 선제(宣帝)를 옹립시켰다.(『한서(漢書)』 제8권, 「선제기(宣帝紀)」).

윤운구의 ‘포학함으로 포학함을 바꾼다.’ 라는 말은 백이·숙제 고사로 인조반정을 평가절하하는 발언이고, ‘창읍왕 고사’ 를 빌어 반정으로 오른 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송광유와 윤운구의 대질심문에서도 창읍왕 내용이 거론되었다. 송광유는 윤운구가 항상 “창읍왕(여기에서는 인조를 가리킴)이 여전히 기백과 골격이 좋다네.” 라고 하며 “서로 절친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지금의 무리들(여기에서는 조정의 대신들을 가리킴)을 죄다 베어 버린 뒤 새관으로 한다면 나라도 편안하고 백성도 편안해질 것이니, 마땅히 창읍왕의 고사를 행해야 하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⁶⁰⁾ 즉 창읍왕을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즉위시켰듯이 인조도 다시 끌어 내리고 새 왕을 추대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사안이었다.

인조가 언관들의 집요한 송광유 처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재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윤운구가 현 조정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진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광유 처벌 논의는 경연 때도 논의되었는데, 특히 1629년 3월 4일 조강(朝講)에서 인조는 윤운구가 영의정이었던 이원익(李元翼)을 평소 늙은 쥐라 능욕하고 다녔다는 말을 듣고는, 조정 최고 대신을 욕한 윤운구를 죽여 마땅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⁶¹⁾ 이와 관련하여 인조는 고변자인 송광유와 김경현에 대해 포상을 고려하기도 했다.⁶²⁾

근일 조정이 윤운구가 있는 것만 알고 나라가 있는 것은 모른다. 무릇 윤운구를 위해 복수하고 신구(伸救)하는 데에 모든 수단을 다 쓰니 내가 매우 괴이하게 여긴다. 송광유가 고발한 것은 무망(誣妄)한 것에 해당되지만 그중에 진실한 말이 없지 않으니 상도 안 주고 벌도 안 주는 것은 안 될 것이 없다. 김경현이 와서 고발한 것은 실로 상을 줄 만한 공이니 그 허실은 논할 것도 없는데 또 시상(施賞)하는 것을 그르다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내가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했다.⁶³⁾

인조는 나랏일은 뒷전으로 여기고 윤운구를 감싸고 구제하는 데만 신경 쓰는 조정 신하들의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인조는 신하들이 윤운구를 위해 복수하고 무죄를 밝히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이어 송광유의 고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할지라도 그 중에는 진실된 말이 없지 않으니 상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조의 생각이었다. 아울러 김경현의 경우는 고변한 내용의 허실을 따지기 전에 상을 내릴만한 공이라며 해조(該曹)에서 논상(論賞)하게 했다.⁶⁴⁾

그러나 사간 정홍명(鄭弘溟)과 정언 오달승(吳達升)은 피험하면서까지 김경현이 상을 받는 것을 반대했다.⁶⁵⁾ 1629년 2월 18일에는 헌납 조경이 꾀치의 경우 이미 처벌을 당하여 김경현의 공로가 없음이 드러났으니, 김경현에게 상을 내리면 공로도 없이 국가에 요행히 상을 바라는 폐단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을 환수하도록 요청했다.⁶⁶⁾ 그러나 인조는 김경현을 시상하지

59) 김우철 역주, 앞의 책, 35-36쪽. 송광유의 진술.

60) 김우철 역주, 같은 책, 131-132쪽. 송광유와 윤운구의 대질심문.

61) 『인조실록』 7년 3월 4일.

62)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1일.

63)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1일.

64)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6일.

65)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2일.

않을 수는 없다며 이 역시 조정의 신하들과 의견이 상충되었다.⁶⁷⁾

송광유의 고변 이후 바로 이어진 김경현의 고변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들의 처벌에 대해 인조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관들은 이 사건의 관대한 처분을 계기로 남을 무고하는 폐단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염려했다. 그러나 언관들과는 달리 인조는 고변자 송광유와 김경현을 처벌할 경우 앞으로 역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이다.

끝으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닌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신하들과 상반된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왕권(王權)을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 역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⁶⁸⁾

IV. 맺음말

송광유 고변사건은 반역 사건이 빈번했던 인조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고변사건은 1628년(인조 6) 12월 17일에 전라도 남원 출신인 송광유가 일부 호남 선비들의 역모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송광유로 인해 총 31명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 중 송광유가 허위로 고발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고(誣告) 사건으로 판명되었다.

우선 고변문서의 주요 내용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송광유의 행적 및 구체적인 고변 동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송광유의 고변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한에 따른 복수심이었다. 두 번째는 공명심의 발로였다. 고변 동기의 근원은 관비인 후양춘을 속량시키고 싶었던 송광유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욕심은 곧 공신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연결되면서 공을 세우는 수단으로 고변을 이용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집권층 내의 이견과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옥사 처리의 쟁점과 성격을 파악했다. 사건 처리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역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윤운구의 무죄 주장과 송광유의 처벌 문제이다. 두 논쟁을 중심으로 김장생과 이귀, 추국청과 언관, 국왕 인조의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장생과 이귀는 윤운구의 억울함을 변론하며 송광유의 무고(誣告)를 주장했다. 추국청과 언관은 무고한 송광유의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조는 윤운구가 조정을 비방하고 욕한 죄에 집중한다.

이귀의 변론 그리고 추국청과 언관의 계속된 논박에도 불구하고 인조의 생각은 달랐다. 인조가 송광유를 처벌하지 않으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했다. 첫 번째로 인조는 송광

66)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8일.

67)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6일.

68) 인조는 국정운영에서 방당정치, 공론정치 등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대해, 왕권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하들의 정치질서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질서를 부정하며 신하들에게 역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인복, 「인조의 군주관과 국정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9(2016), 468-469쪽 참조).

유의 고변 내용에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광유의 고변을 통해 윤운구가 인조반정을 부정하고, 인조를 쫓겨난 창읍왕에 비유하는 사실 등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조는 윤운구가 국왕과 조정을 비방하고 욕한 죄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사에서 송광유를 국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광유의 처벌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인조는 자신을 비방한 세력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표출하며 고변사건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광유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변자를 처벌할 경우 앞으로 역모가 있어도 고변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닌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다. 따라서 더욱 신하들과 상반된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왕권(王權)을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광유 고변사건을 통해 인조 초반 고변사건들을 바라보는 일정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각을 앞으로 인조 재위 기간 내내 발생한 일련의 고변사건으로도 확장하여, 고변사건을 대하는 왕권과 신권의 시선과 갈등을 살펴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문 번역본

김우철 역주, 『추안급국안』 제10권(흐름, 2014)

이귀 저/박세채 엮음/이지희 편역, 『국역 이충정공장소』 제3권(연안이씨 의정공 정화파 종중, 2019)

□ 논저

김건우, 「1629년 말치 고변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 『역사와실학』 44(2011)

김우철,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경인문화사, 2013)

김 탁, 『조선의 예언사상』 上(북코리아, 2016)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2012)

전경목, 「조선시대 역모사건의 조사와 재판」 『조선후기 법률문화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이인복, 「인조의 군주관과 국정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9(2016)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9)

□ 웹 DB 및 전자문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大東野乘』, 『白石遺稿』, 『沙溪全書』, 『史記』
『壽谷集』, 『息庵遺稿』, 『燃藜室記述』, 『愚伏集』, 『芝湖集』, 『漢書』

「인조 6년(1628) 송광유 고변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 토론문

이선아(전북대 이재연구소)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역모와 같은 정치적 사건과 강상죄에 관계된 사회적 사건을 처결하였다. 사안에 따라 추국청(推鞠廳)을 설치하여 왕이 직접 참여하는 친국(親鞫)이나 대신(大臣) 중에 임명된 위관(委官)이 주관하는 정국(庭鞫)이 운영되었다. 추국청에서 심문한 내용과 판결을 모두 기록하여 『추안급국안』을 편철하였는데, 병란(兵亂)으로 임진왜란 이전 자료는 유실되고 현존하는 『추안급국안』은 1601년(선조34)부터 1892년(고종29)까지 조선 후기 약 300년 동안에 발생했던 279건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추안급국안』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 누락되었거나 소략하게 기재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2014년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국역본이 간행된 이후 『추안급국안』을 기본 사료로 활용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 ‘갈등’ 을 바라보는 ‘시선’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사건 가운데 발표자가 주목한 사건은 인조 6년(1628)에 일어난 송광유 고변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고로 밝혀져 송광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고, 발표자는 송광유를 반좌율로 처벌해야 한다는 ‘조정 신하들’ 과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인조의 갈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런데 제목과 목차에서 논문의 주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을 풀어쓰면 ‘인조 6년에 일어난 송광유 고변사건에 대한 인조와 ’ 조정 신하들 ‘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이라고 이해되는데, 갈등의 당사자인 인조의 시선과 조정 신하의 시선이라는 뜻인지..... 제목에서 제시하는 논문의 방향과 본문의 목차와 내용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 ‘조정 신하’ 의 집단화

‘조정 신하’ 도 그 범주와 의미가 애매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조반정은 서인과 남인이 연대하여 광해군을 축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한 사건이다. 당시 조정의 붕당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송광유 고변사건에 대한 ‘조정 신하’ 가 모두 같은 입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발언한 ‘조정 신하’ 를 집단화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제3장에서 조정 신하<김장생과 이귀, 추국청과 언관>와 인조로 구분하여, 김장생(1548~1631)과 이귀(1557~1633)의 ‘주장’ 과 별도로 추국청과 언관의 ‘견해’ 로 정리하였다. 발표자의 석사논문을 참고하면, 사헌부의 김지복(1568~1635)과 사간원의 헌납 조경(1586~1669), 정언 조석윤(1606~1655) 등의 계사가 가장 많은데 김장생, 이귀와 김지복, 조경, 조석윤 등의 연관성에 대해 추적하면 ‘조정 신하들’ 가운데 이 사안을 주도하였던 ‘집단’ 이 규명되지

않을까. 또한 ‘조정 신하’가 인조와 같등하면서까지 송광유를 반좌율로 처벌하고자 하였던 ‘정치적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송광유가 고발한 ‘호남의 선비’

남원에 거주한 송광유는 송익필(宋翼弼)의 일손(孽孫)으로 27세의 나이에 ‘일부 호남 선비의 역모’를 고변하였다. 결국 추국청이 설치되어 약 3개월간 32명에 대한 조사 끝에 ‘무고(無辜)’로 밝혀졌다. 송광유가 고발한 ‘일부 호남 선비’는 윤운구(尹雲衢), 유인창(柳仁昌), 조평(趙平), 유선창(柳善昌), 최홍성(崔弘誠) 등으로 이들이 순창의 제암점(濟巖亭)에 모여 변란을 모의하였으며, 윤운구는 송광유에게 김지수(金地粹) 살해를 부탁하며 역모에 대해 전해 주었다고 한다. 무고로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송광유가 거론한 ‘호남의 선비’에 대해 비중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운구가 죽이려고 했던 김지수는 임진의병장 김제민(金齊閔)의 손자로 김상헌(金尙憲)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고, 조평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으로 정사원종공신(靖社原從功臣)에 책봉되었으며 원두추(1604~1663)는 원두표의 동생으로 공신에 책봉되지는 않았지만 반정에 참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행적과 성향 등으로 보아 역모에 연루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송광유가 고변서에 거론시켰던 것은 인조반정 이후의 남원과 고부, 임실 등지의 지방 사족의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발표문에서는 이들의 입장이나 ‘시선’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타자화하여 조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송광유 처벌 수위에 대한 ‘갈등’과 기축옥사의 테자부

송광유의 고변사건은 무고로 판명되었다. 송광유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복수심과 공명심으로 ‘호남의 선비’를 고변하였지만, 송광유가 고변한 윤운구 등은 김장생과 이귀의 전폭적인 변호를 받았고, 사건은 옥사로 확대되지 않았다. 오히려 송광유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반좌율로 다스려야 한다는 ‘조정 신하’와 고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인조가 대립하였으며 결국 송광유는 무고죄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발표자는 ‘조정 신하’의 요구가 관철된 것에 대해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인조와 같등하였던 ‘조정 신하’가 곧 인조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수궁하기 어렵다. 또한 인조가 ‘신하와 상반된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다소 느슨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석사논문에는 정리되어 있는 송광유의 고변 내용 가운데 ‘허씨 진인설’ 등 당시 유포되어 있던 『정감록』 등 ‘참언’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이 송광유 고변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 같다. 백승종의 『정감록 미스터리』에 의하면 송광유 고변사건을 ‘직접적인 『정감록』 역모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원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거론하면서 ‘윤운구 역모사건’이라고 명명하였다. 인조와 ‘조정 신하’는 진인출현설(真人出現說)에 근거한 역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남은 것은 고발한

송광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조정 신하’는 인조를 설득하여 송광유를 처형하고자 하였나?

당시 전면적으로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인식이나 그에 기반한 세력은 아니더라도 정여립 역모사건에서도 짐작되듯이 정치적 예언 등이 유행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정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서인’은 ‘송광유 고변사건 - 윤운구 역모사건’에서 기축옥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지방 선비의 *가십(gossip)*에 불과한 불확실한 사안을 ‘공론’으로 끌어 들여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단죄와 그러한 선례를 다시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닐까.

메 모

임실접주 허선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가계검토

나하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사관

임실접주 허선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가계검토*

나 하 나**

〈목 차〉

1. 머리말
 2. 임실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3. 허선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
 4. 허선의 가계검토
 5.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아래 권력독점과 비리·부정을 일삼는 벼슬아치에 대한 대항과 이권침탈을 위해 조선에 들어와 농촌경제를 파탄시키는 서양과 일본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것은 동학의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평등사회를 이루고하 하는 이념’과 부합하는 구호로 폭정에 시달리던 농민군들은 동일한 목표아래 동학교도와 함께 결집할 수 있었다.

그 중 전라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전라도 지역은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곳으로 많은 농민들은 부패한 지도층과 쌀을 수탈해 가는 외세에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저항의식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여 각 군현에서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확대되어 갔다.

이 중 임실지역은 동학 지도자 최시형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집강소를 세웠던 지역이다. 임실지역 천도교인들이 작성한 『천도교임실교사(天道教任實教史)』¹⁾에 의하면 임실지역 중 ‘청웅면 조항마을’은 동학 2대 지도자인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이 장시간 머물면서 전라도 지역에 포교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²⁾ 이

* 이 발표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유족등록신청에 대해 처리를 완료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허경중(2020년 등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동학농민군이자 임실접주인 허선에 대해 정리한 것임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사관

1) 『天道教任實教史』는 임실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승우(崔承雨, 1861~1926)의 후손인 최동안(崔東安, 1915~2007)이 중심이 되어 천도교임실교구에서 임실지역 천도교인들의 활동을 정리한 것(1973년 草稿, 1981년 刊行)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 지도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

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된 동학의 교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 및 부패척결과 맞물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등록 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87명 중 83명의 동학농민군이 임실지역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³⁾

그 중 허선(許善)은 최시형이 조항마을에 와서 포교활동을 할 때 유숙할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다. 이 때문에 동학에 입도하고 교조신원운동을 위한 동학관련 취회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로 2009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등록한 농민군이다.

그러나 허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최시형과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중 잠시 그 이름이 언급될 뿐 허선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가족관계 및 인적 사항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임실접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허선에 대한 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임실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9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은 소수의 지주와 부농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면서 많은 농민들은 점차 농지에서 배제되어 소작농민이 되었다. 지주층은 주로 왕실, 각 아문, 양반층으로 구성되었고, 소작농민층은 주로 상·천민으로 구성되었지만 일부 몰락한 양반층도 포함되었다.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은 일 년 내내 땀 흘려 일해도 수확량의 대부분을 조세와 잡다한 세금으로 빼앗겼으며, 이는 그들이 해마다 부채를 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게다가 지주층은 토지집적을 위해 빈농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높은 이자로 곡식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시 그 토지를 지주가 수탈하는 것이 빈번했다.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잘못된 정치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종교를 찾게 만들었다.

당시 동학은 1860년에 1대 지도자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창도한 이래 조선후기 봉건적 모순을 극복하기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은 경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수탈을 많이 당하고 있던 전라도에도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교세의 확장 속에서 사회변혁지향 세력도 동학에 입도하였는데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 역시 이러한 사회변혁지향 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⁵⁾

2)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조항마을) 1093번지' 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 최시형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포교활동을 한 곳으로 이곳이 최시형이 머물렀던 '허선의 집터' 로 알려져 있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전라북도 1-』, 2011, 124~127쪽)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87명 중 전북지역 참여자는 914명이며 그 중 83명이 임실지역과 관련된 동학농민군입(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www.cdpr.or.kr)

4) 왕현중,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 한국역사연구회, 33~34쪽

5) 조성운은 공주, 진천, 진주 등지에서 변란을 도모했던 이필제(李弼濟, 1825~1871)가 동학 포교 초기에 문경에서 최제우를 만나 입도했고 동학농민혁명 주도세력이었던 서병학, 서인주, 전봉준, 김개남, 김성기, 유태홍, 김재홍, 손화중 등도 사회변혁을 지향하던 세력이었다고 보고 있음(조성운,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포접제와 관련

임실지역의 동학은 포덕 14년인 1873년 3월에 동학 2대 지도자인 최시형(崔時亨)이 김신중(金信鍾)을 데리고 조항마을[鳥項峙]에 들어와 설법을 하면서 정착되었다.⁶⁾

이후 1892년 11월에 삼례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면서 동학 입도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1910년 박내홍(朴來弘, 호 玄波, 1894~1928)이 작성한 『全羅行』에는 임실의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任實은… 靑雄面 새목티는 甲午年間에 東學 諸頭領의 居所이엇음으로 海月神師 자조 行次하시며 恒言하사대 「任實은 山氣가 조흐니 사람이 만히 살갓다」 하신바 甲午年 東學亂時에 一郡이 道家안인 집이 거이업스되 遭變者는 只三人뿐이라한다⁷⁾

이러한 기사는 동학이 임실에 들어온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동학이 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임실이 전라도 동부 산악권과 서부 평야지대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동학의 지도자와 직접 관계를 맺으며 출발하고 덕망과 학식, 재력을 갖춘 인물⁸⁾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다.

고부봉기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확산됨에 따라 동학의 교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군들은 1894년 백산창의문을 통해 전국 각지의 농민군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3월 25일에는 임실 지역 대표 접주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참여한 임실지역 접주들로 최승우(崔承雨)·최유하(崔由河)·임덕필(林德弼)·이병춘(李炳春)·최우필(崔祐弼)·조석휴(趙錫休)·이만화(李萬化)·김병옥(金秉玉)·문길현(文吉鉉)·한영태(韓榮泰)·이용학(李龍擧)·이병용(李炳用)·곽사회(郭士會)·허선(許善)·박경무(朴敬武)·한군정(韓君正) 등 16인이 기록되어 있다.⁹⁾ 이 중 도접주(都接主)는 최승우이며, 김신중·이병춘·김학원·김영원·최유하·허선·조석휴·박경무 등은 접주(接主)로 알려져 있다.¹⁰⁾

전봉준의 농민군과 합세한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들은 백산대회를 통해 대장에 전봉준(全琫準, 1855~1895), 총관령(總管領)에 손화중(孫華仲, 1861~1895)·김개남(金開南, 1853~1894), 총참모(總參謀)에 김덕명(金德明, 1845~1895)·오시영(吳時泳), 영솔장(領率將)에 최경선(崔景善, 1859~1895), 비서(秘書)에 송희옥(崔景善)·정백현(鄭伯賢, 1869~?)을 두고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하여-」, 『역사와 교육』 19, 2014, 114~115쪽)

6) “…任實邑에서 南쪽으로 距里 約 三十里에 位置한 새목치(鳥項峙)라는 재가 있다… 海月神師께서 이마을에 布德十四年 西紀 一八七三年 癸酉 三月에 日字未詳 長水敎人 金信鍾을 다리고 오시여 許善氏家에 자리를 定하시고 道場을 베풀러 說法布敎하시자…” (『天道敎任實敎史』, 천도교임실교구, 1981, 7-8쪽.)

임실지역 포교 시점에 대해 『천도교임실교사』와 달리 1889년에 처음 포교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이진영)과 1880년에 포교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성주현, 표영함) 등이 있음(주 19. 참조)

7) 玄波, 「全羅行」, 『天道敎會月報』 167, 1910.5.15.(천도교중앙총부, 『天道敎會月報』 19, 1978, 426쪽)

8) 동학의 임실 포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임실의 대접주였던 최봉성과 그의 사위 김흥기, 아들 3형제[최승우, 최유하, 최동필], 김영원, 한영태 6인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형제결의를 맺고 포교에 전력을 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임실의 역사」, 『임실군지』 1, 임실군지편찬위원회, 2020, 54쪽)

9) 오시영, 「檄文」, 『東學史(草稿本)』, 1940(『叢書』 1, 456~457쪽)

10) 『천도교임실교사』, 1973, 6쪽.

참여하였다.¹¹⁾

백산에 모였던 동학농민군은 관군과의 접전 끝에 전주에서 화약을 맺으면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 때 임실지역은 7월 7일에 농민군과 규합하여 임실읍에 집강소를 설치하였지만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실현감 민충식이 동학에 입교¹²⁾하고 김개남과 결의형제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임실지역 집강소는 폐정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집강소 설치 후 8월에 1만여 명의 임실지역 동학농민군이 합류하여 공주에서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과 대접전의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농민군들은 전투에서 패함에 따라 퇴각하였고, 이 때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들도 흩어져 회문산(回文山)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임실지역 동학농민군들은 일본의 내정간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이어나가는 전라도 의병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전라도 지역 3.1운동은 동학이었던 천도교¹⁴⁾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전주교구를 통해 임실교구에 전해진 3월 2일부터 임실지역에서 적극적인 3.1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임실지역에서 3.1운동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른 사람이 80여명¹⁵⁾에 이른다.

이처럼 동학교리가 임실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동학교도의 사상과 맞물려 있던 농민봉기와의 협력은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임실지역은 동학이라는 종교로 먼저 시작했지만 평등과 부패에 대한 대응으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3.1운동의 민족운동까지 연결된 것이다.

3. 허선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

허선(許善)은 전북 임실군 청웅면 조항마을에 거주했던 동학교도로 2대 지도자 최시형(崔時亨)이 허선의 집에 거주하면서 설법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도교임실교사』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任實古號는 雲水이며 任實邑에서 南쪽으로 距里 約 三十里에 位置한 새목치(鳥項峙)라는 재가 있다.
이 鳥項峙 밭작 밑에있는 基當時 拾餘戶되는 새목터 鳥項峙라는 마을이 있다. 海月神師께서 이마을

11) 오지영, 『동학사』, 1940(『東學思想資料集』 2, 467~468쪽)

12) 임실현감(任實縣監) 민충식(閔忠植)은 1894년 9월에 김개남의 도성찰(都省察)이 되어 김개남과 함께 활동하였고, 전주성에도 함께 들어갔다가 임실로 돌아온 후 일본군에게 잡혔음.(『양호우선봉일기』, 갑오(1894)년 12월 1일)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민충식을 파출(罷黜)함(『고종실록』 32, 고종31년 12월 12일)

13) 「임실의 역사」, 『임실군지』 1, 임실군지편찬위원회, 2020, 54~55쪽

14) 동학은 3대 지도자 손병희(孫秉熙, 1861~1922)에 의해 1905년에 ‘천도교(天道教)’로 이름을 바꾸었음

15) <己未三一運動紀念碑>(임실군 운암초등학교 앞 소재)은 1983년 6월 17일에 참여자의 후손들이 세운 비석으로 <甲午東學革命紀念碑>와 <戊寅滅倭運動紀念碑> 세 개가 함께 세워져 있음. ‘己未 三一運動 謀議者 名單’에는 8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이름을 작성한 것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됨

에 布德十四年 西紀 一八七三年 癸酉 三月에 日字未詳 長水敎人 金信鍾을 다리고 오시어 許善氏家에 자리를 定하시고 道場을 베풀러 說法布敎하시자 이 所聞이 널리 퍼져 遠近人士雲集拜謁하고 說法을 들은 선비들은 선비의 本議를 저버리고 돈에만 눈이 어두운 自己네 꿈인 卜術 地理述 醫術 그 밖에 여러 가지로 速富가 되어보려는 속 시험이었던 그들 뜻과는 正反對가 됨으로 모두 물너나고 其中에서 崔胤成 許善 表應三 崔胤項 崔胤官 金榮遠 崔承雨 申明燁 金學遠 等 많이 三十五日間이란 長期的 說法과 敎理를 배우는 途中...16)

이를 통해 동학 지도자 최시형은 허선의 집에 머물면서 동학을 포교했고, 인근의 여러 인사들이 모여들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동학교리를 익혔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 허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실지역에서 최초로 동학에 입도한 인물 중 한명이 허선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천도교입실교사』의 기록과 임실지역 천도교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조항마을] 1093번지’는 허선의 집터로 알려져 있다.¹⁸⁾ 당시 임실군 청웅면 새목터[조항마을]의 허선의 집에서 최시형이 1894년 9월 재봉기 이후 우금치전투 등 격전이 벌어지는 시기의 대부분을 여기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했다고 한다. 이후 전라도 농민군이 재봉기하자 최시형은 자신을 찾아 허선의 집까지 온 손병희를 만나 충청도 보은으로 북상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영원(金榮源, 1853~1919)의 손자인 김정갑(金正甲, 1917~2017)이 1970년대에 최시형의 설법장소를 안내하여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 바로 위인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가 설법장소로 알려졌고 현재 표시석이 세워져 있다.¹⁹⁾



[그림 1] 임실 청웅면 새목치의 ‘최시형 설법장소’



[그림 2] 최시형 설법장소 표시석

16) 『天道敎任實敎史』(천도교입실교구, 1981, 7~8쪽)

17) 성주현은 표영삼(「전라좌도 남원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2, 천도교중앙총부, 1999)의 논문과 『천도교입실교사』를 근거로 임실에 동학이 들어온 것은 1880년이며 허선(許善)과 김학원(金學遠)이 1880년 3월 10일에 가장 먼저 입도했다고 보고 있음(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14, 2005, 23쪽)

그러나 이진영은 동학이 임실에 전래된 것은 1889년 2월 경으로 이때 최봉성의 주관하에 허선, 표용삼, 최봉욱, 최봉관, 김영원, 최승우, 신명화, 김학원 등이 처음 동학에 입도했다고 보았음(이진영,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전북사학』 20, 1997, 393-396쪽)

1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전라북도 1-』, 2011, 124~127쪽

19) 표시석에는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가 <해월신사 동학교리 설법장소>로 “...주치리 새목터 허선의 집에서 35일간의 설법을 시작하신 것이 처음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렇듯 허선은 임실지역 동학 포교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며 임실지역에서 가장 먼저 입도한 인물이다. 또한 1892년 삼례취회(參禮聚會)²⁰⁾에 참여하고, 1893년 서울 복합 상소문자리에 참석한 임실대표 중 한 명이다.

布德 三三年 단기 四二二五 서기 一八九二 壬辰 十一月 三日 參禮聚會 모음에 任實서 崔承雨 李炳春 金신종 金永遠 김병옥 崔由河 허선 趙錫休 황희영 朴敬武 李鍾根 김학원 등이었다. 布德 三四年 단기 四二二六 서기 一八九三 癸巳 三月 서울복합상소문자리에 任實 崔承雨 김신종 김영원 이병춘 조석휴 김영원 허선 한영태 등이 임실지방대표로 참석하였다.²¹⁾

허선은 이처럼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 동학교도 중 임실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선은 1906년 제29교구장으로 선임된 후 1907년 정주순독(定住巡督)과 원직교수(原職教授) 선정 추천인, 정주교사(定住教師)로 선임²²⁾되었으며 1907년 11월 30일에 손병희(孫秉熙, 1861~1922)에게 ‘미암(溪菴)’이라는 도호를 받았다.²³⁾ 이러한 활동들은 허선이 동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허선은 동학교도로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도 직접 참여하여 임실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접주 중 한명이었다.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어난 후 최시형은 각 포의 접주들에게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라”²⁴⁾는 지시를 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접주들은 무장봉기하여 전봉준과 함께 2차 봉기에 합류하였다. 허선 또한 1894년 갑오년에 도접주(都接主)로서 봉기하는 농민군을 규합²⁵⁾하였고, 임실에 설치된 집강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동학교도이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며 임실접주였던 허선은 1907년 동학 지도자 손병희에게 도호를 받았다는 기록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천도교임실교사』를 해제한 『任實東學史』에 ‘허선’의 당호는 국당(菊堂)으로 갑오·갑진·기미 3대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천도교임실교사』를 통해 이는 ‘허성(許誠)’에 대한 기록으로 이름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²⁶⁾

20) ‘삼례취회’는 동학교도 탄압에 대해 포교의 자유를 얻으려는 민소운동(民訴運動)에 대해 최시형이 입의문(立義文)을 지어 도도(道徒)에 전하면서 1892년 11월 1일(음)에 수천의 동학도가 삼례에 모인 집회임

21) 『천도교임실교사』, 천도교임실교구, 1973, 5~6쪽

22) 이동초, 『天道教會 宗令存案』,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38~39·118·128쪽

23) 『천도교서』, 1920(『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1996, 338~340쪽)

24) 이돈화, 『天道教創建史』, 1933(『東學思想資料集』 2, 155쪽)

25) 『천도교회사초고』에는 1894년에 기포한 임실군 접주는 최승우(崔承雨), 최유하(崔由河), 임덕필(林德弼), 이만화(李萬化), 김병옥(金秉玉), 문길현(文吉賢), 한영태(韓榮泰), 이용학(李龍學), 이병용(李炳用), 곽사회(郭士會), 박경무(朴敬武), 한군정(韓君正), 조석걸(趙錫杰), 이병춘(李炳春), 허선(許善) 등이며(『천도교임실교사』, 천도교임실교구, 1981, 16~17쪽), 김정갑은 1894년 당시 임실에는 31명의 접주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함(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27쪽)

26) 『任實東學史』의 천도교 개인별 공적을 기록한 부분에 ‘허선(許善)’의 행적이 “堂號 菊堂, 청웅면 옥석리 새목치 출신이고 교훈은 인법포 연원대표. 포덕 55(1914)년 제5대 임실교구장을 역임, 갑오·갑진·기미 3대 운동에 그 공이 지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전북역사문화학회, 『임실동학사』, 2006, 113~114쪽). 그러나 『천도교임실교사』(1973·1981) 확인 결과 이는 ‘허성(許誠)’의 기록으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됨

허선은 동학교주 최시형이 임실에서 포교활동을 할 때 함께 기거했고 임실지역에서 가장 먼저 입교하여 교조신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군을 이끌었던 접주 중 한명으로 임실지역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상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실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자료에서 ‘허선’이 자주 언급됐음에도 단지 최시형의 포교를 도와준 인물로만 간단히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허선의 가계검토

허선은 1907년에 ‘미암’ 도호를 받은 이후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허선의 생몰년과 유족들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임실지역 주요 접주 중 한 사람이나 임실지역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기록인 『천도교임실교사』에 인물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에 집안에서 전승되는 내용을 통해 증조부가 ‘허선’ 일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제적부」 상 증조부의 이름은 ‘허경중(許京重)’으로 1904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임실 접주 허선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신청인의 본적지가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5번지’로 허선의 집터로 알려진 ‘옥석리 1093번지’의 맞은편에 있고 신청인도 천도교집안으로 증조부 사망 당시 만장기가 집 앞부터 마을 입구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로 천도교 내에서 지위가 높았었다는 집안 전승이 있었다. 당시 동학의 포교가 기본적으로 친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배경을 감안할 때 허선과의 관계를 파악할 만 하였다.

현재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는 임실접주 허선에 대해 알려진 바도 없고 허씨가 한 가구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허씨가 많이 살았었다는 증언²⁷⁾에 따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통해 1914년부터 2003년까지 임실 청웅면 옥석리의 허씨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여 22개 번지에서 허씨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였다.

허선의 집터로 알려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는 지목이 밭[田]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공적서류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66번지’의 「제적부」에서 ‘허선’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밭으로 집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허선의 집터로 알려진 ‘1093번지’와 145m 떨어진 곳이며, 최시형이 설법한 장소인 ‘1137번지’와 200m 떨어진 곳이었다.

허선의 집터가 최시형 설법장소 바로 아래인 ‘1093번지’로 알려진 것은 최시형이 허선의 집에 은신하면서 설법을 했다는 이야기가 천도교인 사이에서 전해짐에 따라 그 위치를 설법

27) 청웅면 마을 이장 김용덕(1970년생)과 김인기(1944년생) 증언

장소 기준으로 확인하고 허선의 집터를 추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066번지’의 호주는 ‘허섭(許涉, 1883~1942)’으로 양천허씨(陽川許氏)이며 그 부친 허선(許善)은 1908년 2월 7일에 사망하였다. 허선이 1908년 2월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1907년 이후 입실 전주 허선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허선의 족보명은 ‘허륜(許淪)’으로 양천허씨도사공파(陽川許氏都事公派) 29세손이나 허선의 부친 허정(許釘)은 대가 끊어진 집안의 봉사손으로 입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정의 양부와 친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승손(承孫)’이로 양천허씨의 제사를 받들고 있었던 것이 족보에서 확인된다.

허정의 생부와 양부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자세한 집안의 이야기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묘가 청웅면 조항리 와우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친 때부터 조항마을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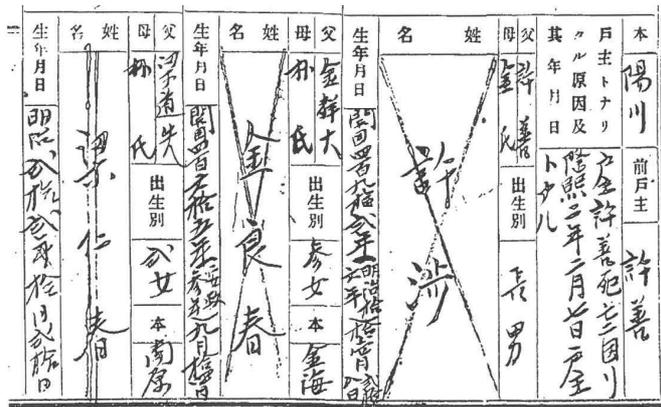
28) 『陽川許氏世譜』, 양천허씨도사공파보소, 1993, 64쪽·541~542쪽.

[표] 양천허씨 도사공파 세계도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釘	장남 淪 [善]	장남 機 [涉]	장남 亮萬 [亮]	장남 康旭	
			이남 龍萬 [龍]	장남 永旭	
			삼남 雲萬 [雲]	장남 泰旭	
		이남 榆 [錠]	장남 允萬 [福南]	이남 東旭	
	이남 洲	장남 桐			
	삼남 淵 [京重]	장남 栻 [述]			
		이남 柱 [呈]	장남 奎萬 [旭]	장남 太暎 [太暎]	
				이남 暎愨 [暎愨]	
	사남 永	장남 櫛	장남 允萬	장남 昌旭	장남 瑛會
					이남 根會
					삼남 潤會
					사남 奭會

- 출처 : 『陽川許氏都事公派世譜』(2017), 허섭·허량·허술의 「제적부」
- []안은 호적상 이름임

허선은 4형제 중 장남이며, 부친 허정 이래 형제들 모두 ‘임실군 청응면 옥석리 조항마을’에 모여살고 있었다.²⁹⁾ 『陽川許氏世譜』에서 허선은 1843(癸卯)년 6월 12일 생으로, 2월 7일에 사망하여 임실군 청응면 조항리와우동에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에서는 허선의 사망연도가 기록되



[그림 4] 허섭의 「제적부」: 전호주이자 부친에 ‘허선(許善)’의 이름이 확인됨

29) 신청인 허태영(許太映, 1979년생)은 임실 접주 허선의 동생인 허경중(許京重, 족보명 淵, 1849~1905)의 증손자로 허선과 허경중은 바로 인접한 곳에 살고 있었음. 신청인과 모친 정성자(鄭成子, 1956년생)는 부친 허욱(許旭, 1951~2000)에게 증조부의 4형제들은 모두 모여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허선 형제 「제적부」에도 4형제가 모두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됨

지 않았으나, 「제적부」에 1908년 2월 7일에 사망으로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허선이 1843년부터 1908년까지 6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선은 경주김씨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허섭(許涉, 족보명 機, 1883~1942), 차남이 허정(許錠, 족보명 楡, 1887~1952)이며, 전주에 사는 최판동(崔判同)과 결혼한 딸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족보에는 허선의 부인 경주김씨 묘가 ‘남원군 덕과면 망동마을’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허선의 장남인 허섭의 「제적부」에 모친 김양춘(金良春)이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허선 부인 묘가 임실이 아닌 남원에 있는 이유와 상통한다.

허섭은 두 번의 결혼을 통해 3남 3녀를 두었는데 허섭의 장남인 허량(許亮, 족보명 許亮萬, 1926~?)은 부친 허섭이 사망한 1942년 이후에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로 이주하였다.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는 허선의 부인이자 허량의 조모인 김양춘의 무덤이 있는 곳이며, 허섭의 두 번째 부인 김몽희(金夢喜, 1901~?)의 본적지이다.³⁰⁾ 즉 허량은 부친 허섭의 사망 이후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외가인 남원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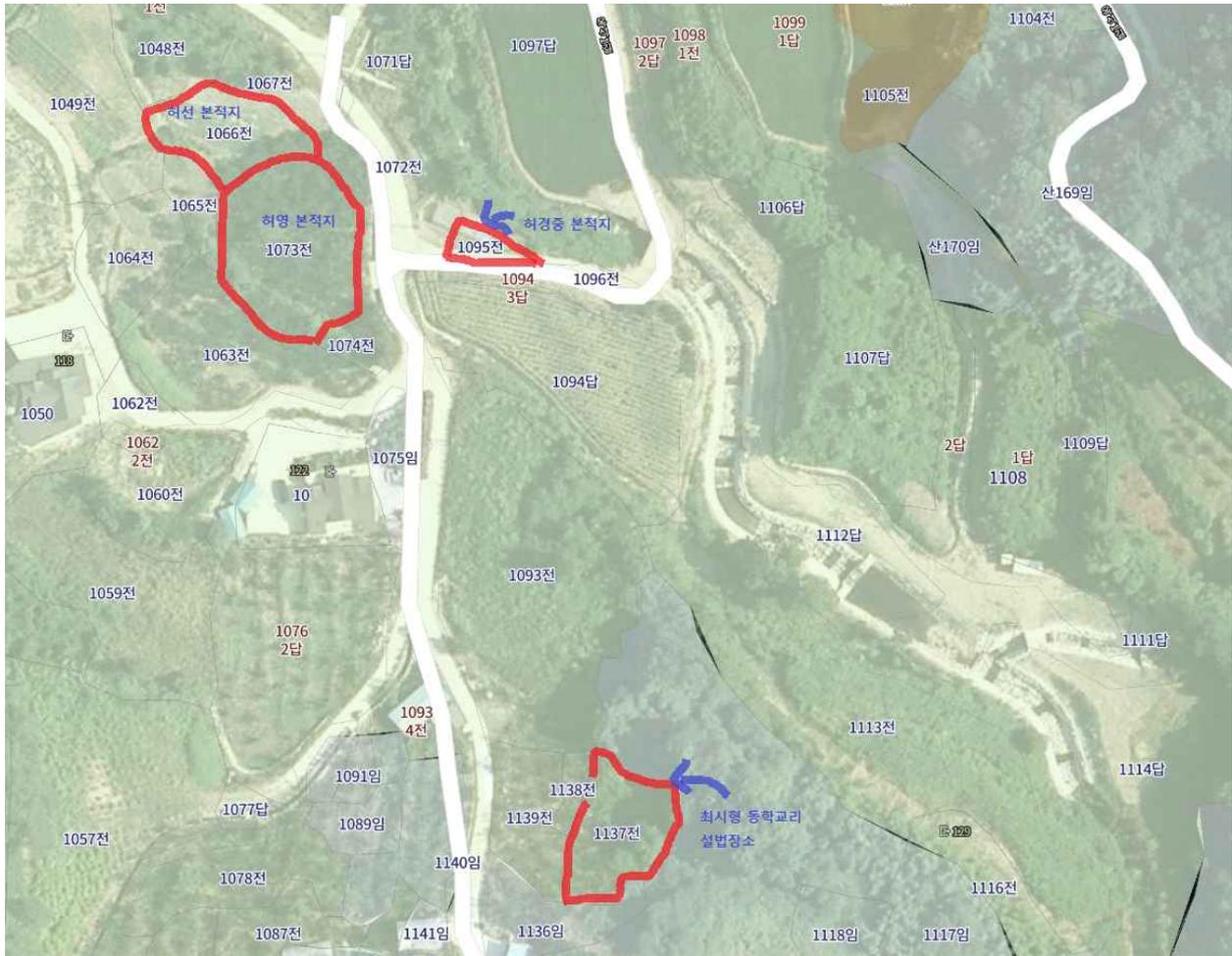
이러한 이주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허선의 동생 허경중(許京重, 1849~1905)의 유족들은 증조부 허경중이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재산을 제공하였고, 이후 천도교 박해를 피해 자주 이주함에 따라 재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허선의 후손들이 임실을 떠나야 했던 이유와 상통할 것이다.

허선의 후손들이 임실을 떠나면서 임실 접주 허선의 생애에 대해 증언 해줄 후손과 자료들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의 행적을 파악할 길이 사라진 것이다.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 살았던 허선 후손의 「제적부」를 통해 허선의 생몰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웅면 옥석리 1066번지’가 허선의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허선의 집터로 알려져 있던 ‘청웅면 옥석리 1093번지’가 <허선 집터>로 알려진 이유는 최시형 설법장소인 ‘청웅면 옥석리 1137번지’와 맞닿아 있으며, 정확한 기록이 아닌 천도교인 사이에서 내려오는 구전으로 그 장소를 추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공문기록 상 ‘1093번지’는 지목이 밭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최시형의 설법장소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청웅면 옥석리 1066번지’가 허선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곳으로 그 주변에 허선의 형제인 허경중(1095번지)과 허영(許永, 1915~?, 1073번지)이 모여 살면서 최시형의 설법을 도왔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고 동학에 입도하고 임실 접주로 활동했던 장형 허선을 도와 형제들이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형제의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천도교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선의 후손들은 고향인 임실군 청웅면 조항마을을 떠나 외가인 남원으로 이주하게 하였고, 동생인 허경중의 후손들에게 천도교인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숨기고 간간히 집안 선조들의 이야기가 전승되었던 것이다.

30) 1915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남원군 덕과면 덕촌리원도」에서 김몽희의 부친 김창길의 토지소유사실을 확인함(출처 :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그림 4] 임실 청웅면 옥석리 최시형 설법장소와 허선 형제들의 본적지

5. 맺음말

전라도 임실은 동학의 지도자인 최시형이 직접 들어와 동학 교리를 설교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했던 지역이며, 혈연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동학이 확대된 지역이다. 동학 지도자와의 인연으로 임실지역 동학교도들은 교조신원운동 등 종교적인 모습으로 적극 대처하였다. 고부봉기 이후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전봉준의 농민군과 함께 봉기하고자 1894년 9월 2차봉기에 맞추어 임실의 동학지도자들도 기포하였다.

이 때 허선 역시 임실을 대표하는 접주로 농민군과 함께 하였다. 특히 허선은 동학 지도자 최시형의 임실지역 포교를 위해 은신을 돕고 사람들을 모아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교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인물로 임실지역 최초의 동학 입교자였으나, 임실지역 천도교 관련자를 작성해 둔 『천도교임실교사』의 인물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의 행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

다.

『천도교임실교사』를 편집했던 김영원·최승우의 후손은 임실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승된 내용과 자료들을 통해 임실지역 접주는 대부분 김영원과 최승우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허선은 동학 이후 1905년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할 시기에 사망하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 천도교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실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번 졸고를 통해 임실의 접주 중 한 사람인 허선의 생몰년과 집안·집터, 최시형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원으로 이주한 허선의 후손들에게 집안 전승과 자료 등을 확보한다면,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陽川許氏世譜』, 양천허씨도사공파보소, 1993

『陽川許氏都事公派世譜』, 양천허씨도사공파보소, 2017

『天道教任實教史』(1973년 草稿, 1981년 刊行)

『천도교서』, 1920(『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8, 1996)

『天道教會月報』 167, 1910.5.15.(천도교중앙총부, 『天道教會月報』 19, 1978)

이돈화, 『天道教創建史』, 1933

오지영, 『동학사』, 1940

전북역사문화학회, 『임실동학사』, 200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 전라북도 1-』, 2011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 2020

성주현, 「동학혁명 참여자의 혁명 이후 활동(1900-1919)」, 『문명연지』 14, 2005

왕현중,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 한국역사연구회, 1991

이진영,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전북사학』 20, 1997

조성운,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포접제와 관련하여-」, 『역사와 교육』 19, 2014

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임실접주 허선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가계 검토」에 관한 토론문

송만오(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본고는 임실 출신 동학 접주였던 허선의 활동과 가계에 관한 연구이다. 허선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시형의 임실 포교활동을 도왔으며, 또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그만큼 허선은 전라도나 임실의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허선을 주목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계 최초로 허선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글이요, 따라서 앞으로 허선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본 논문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그 아쉬움은 모두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요, 따라서 필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가담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동학농민혁명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동학농민혁명 가담자들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점은 허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추측된다. 결국 발표자는 얼마 안 되는 사료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발표자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글에 어떤 토를 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본인이 토론자로 지정된 이상, 뭔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몇 마디 덧붙임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다만 토론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토론자의 지적 중에는 매우 터무니없는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첫째: 제목에 굳이 가계 검토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저 허선의 인물과 활동하면, 그 안에 허선의 가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리라는 점은 모두 다 짐작하게 되어 있다. 인물사에 관한 논문들은 대개 다 그렇게 쓴다.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본고의 주인공은 허선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고의 목차를 보면 임실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선은 주가 아니라 從이 된 느낌이 든다. 허선을 중심으로 다시 구상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허선의 가계를 입증하는 근거로 그들 집안의 족보를 참고하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고하는 족보의 발간 년도가 너무 늦다. 일정 때나 혹은 해방을 전후

한 시기에 나온 족보는 없는지 확인했으면 한다. 허선에 관한 재판 기록도 있는지 알아보기 바란다.

넷째: 문장의 주술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다. 논문집에 게재하기 전에 문장을 크게대로 수정해 주었으면 한다. 근거 자료가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설명에,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은 경우도 간혹은 눈에 걸린다.

메 모
